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

2023. 8.

환 경 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변화국제협력팀



목 차



| | |
|---|----|
| 제1장. 총 칙 | 1 |
| 제2장. 국제감축사업 운영체제 | 4 |
| 제3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6 |
| 제4장. 국제감축사업 및 지원기업의 선정 | 8 |
| 제5장. 사업의 협약 체결·변경 및 해약 | 12 |
| 제6장. 정부지원금의 관리 | 14 |
| 제7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 16 |
| 제8장. 설치 지원사업의 국제감축실적의 확보 | 20 |
| 제9장.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조사결과의 확정 및 설치 지원사업 연계 | 21 |
| 제10장. 보 칙 | 22 |
| 부 칙 | 23 |



별표



| | |
|---|----|
| [별표 1의1]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절차 (설치 지원사업) | 27 |
| [별표 1의2]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절차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28 |
| [별표 2] 제재등급 분류표 | 29 |
| [별표 3]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사업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기준 | 30 |
| [별표 4의1] 국제감축사업 선정평가 기준 (설치 지원사업) | 33 |
| [별표 4의2] 국제감축사업 선정평가 기준 (예비/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35 |
| [별표 5의1] 최종평가 기준 (설치 지원사업) | 37 |
| [별표 5의2] 최종평가 기준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38 |
| [별표 5의3] 최종평가 기준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39 |
| [별표 6] 국제감축실적 분배 기준 | 40 |
| [별표 7] 대상국 의향서 작성 필수요건 | 41 |



별지 서식



| | |
|--|-----|
|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45 |
| [별지 제2호] 비밀준수 서약서 | 46 |
| [별지 제3호] 청렴 서약서 | 47 |
| [별지 제4호의 1]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설치 지원사업) | 48 |
| [별지 제4호의 2]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65 |
| [별지 제5호의 1] 국제감축사업 평가표 (설치 지원사업) | 77 |
| [별지 제5호의 2] 국제감축사업 평가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79 |
| [별지 제6호의 1] 업무협약 (설치 지원사업) | 81 |
| [별지 제6호의 2] 업무협약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95 |
| [별지 제7호] 서약서 | 107 |
| [별지 제8호의 1]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설치 지원사업) | 108 |
| [별지 제8호의 2]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111 |
| [별지 제8호의 3] 관리계좌 확인서 | 113 |
| [별지 제9호의 1] 최종보고서 양식 (설치 지원사업) | 114 |
| [별지 제9호의 2] 최종보고서 양식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116 |
| [별지 제10호의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설치 지원사업) | 118 |
| [별지 제10호의 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123 |
| [별지 제11호의 1] 착수신고서 (설치 지원사업) | 128 |
| [별지 제11호의 2] 착수신고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129 |
| [별지 제12호의 1] 준공신고서 (설치 지원사업) | 130 |
| [별지 제12호의 2] 완료신고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131 |
| [별지 제13호]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고서 | 132 |
| [별지 제14호] 사업 포기각서 | 135 |
| [별지 제15호] 실시상황 보고서 | 136 |
| [별지 제16호] 사고 보고서 | 137 |
| [별지 제17호의 1] 최종평가서 (설치 지원사업) | 138 |
| [별지 제17호의 2] 최종평가서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139 |

| | |
|---|-----|
| [별지 제17호의 3] 최종평가서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140 |
| [별지 제18호] 이의신청서 | 141 |
| [별지 제19호]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 142 |
| [별지 제20호] 외부위탁용역 활용계획서 | 143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

| | |
|-------------------|--------------|
| 제정 기후변화국제협력팀-552호 | 2021. 12. 20 |
| 개정 기후변화국제협력팀-149호 | 2022. 03. 31 |
| 개정 기후변화국제협력팀-378호 | 2022. 08. 01 |
| 개정 기후변화국제협력팀-269호 | 2023. 04. 21 |
| 개정 기후변화국제협력팀-567호 | 2023. 08. 25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8조,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국무조정실 고시 제2022-123호)(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이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전담기관”이란 장관이 영 제38조제1항 및 영 제74조제2항 8부터 11, 고시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고시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국제감축사업”이란 환경부장관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말하며, 국내기업 등이 추진하는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 설치 사업, 구매 사업을 포함한다.
4. “국내기업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을 의미하며,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 법인) 및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5. “신청기업”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국제감축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탁·전담기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국내기업 등을 말한다.
6. “지원기업”이란 국제감축사업을 신청한 기업 중에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국내기업 등을 말한다.

7. “주관기업”이란 2개 이상의 신청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운영·보고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란 2개 이상의 신청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업에 선정된 경우,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9. “수행책임자”란 주관기업에 소속된 자로 국제감축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0. “신청사업”이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기업이 사업신청서를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11. “타당성조사”란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 기초 현황, 법률,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설계, 리스크,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가. 예비 타당성조사 : 국제감축사업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성을 검토

나. 본 타당성조사 :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에 대한 세부조사 성격

12.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란 국내기업 등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국제감축사업의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말하며, 예비 타당성조사와 본 타당성조사를 포함한다.
13. “설치 지원사업”이란 국내기업 등이 해외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설비 설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14. “지정공모”란 정부 간 합의에 의하여 또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공모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감축사업의 내용을 정하여 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5. “정책지정”이란 위탁·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직접 타당성조사·설치수행·지원 또는 검토중인 사업이거나 특정한 신청기업만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여 국제감축사업의 내용과 지원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협력체계 구축”이란 국제감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 양자협정 체결, 이행 세부규칙 협의 등을 말한다.
17. “사업비”란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총 비용을 말한다.
18. “타당성조사 정부지원금”이란 지원기업이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으로의 추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부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19. “설치 정부지원금”이란 지원기업이 수행하는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0. “민간부담금”이란 사업비 중 지원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현물과 현금의 합계를 말한다.
21. “정산”이란 정부지원금 신청서 제출시의 예산 비목과 실제 집행내역의 비교를 통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2. “설치 확인”이란 설치 지원사업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3. “조사결과 확인”이란 타당성조사 지원기업이 수행한 타당성조사가 정부지원금 교부 목적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히 조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4. “취득설비”란 설치 지원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설비 등 유형자산을 말한다.
25. “조사결과”란 타당성조사 사업 수행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 분석 단계 결과물, 최종보고서, 연구결과 등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26. “다른 용도로 사용”이란 정부지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가. 설치 지원사업 : 설비의 종류, 규격 등 정부지원금 지급 시 결정된 중요 내용에 위반하여 설비를 설치

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필요항목, 사업비 사용계획 등 정부지원금 지급 시 결정된 중요 내용에 위반하여 조사를 수행

27. “국제감축실적”이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실적으로서, 지원기업이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취득한 것을 말한다.
28. “모니터링”이란 지원기업이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9. “인증유효기간”이란 국제감축실적 발급이 가능한 기간으로 지원기업이 설치 지원사업의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다.
30. “상응조정”이란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에 대해 참여 당사국이 동일한 수량을 조정(+/-)하여 이중계산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상응조정 세부 방식은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②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고시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①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환경분야(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 폐기물 취급 및 처리, 물 관리 등)를 포함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정부지원금의 비율은 사업공고에 따라 지정한 비율에 따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위탁·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지원범위를 달리 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타당성조사 정부지원금 : 인건비 및 경비를 대상으로 하고, 인건비는 타당성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에 한하며, 경비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국내·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자문료, 세미나 참가비, 번역료, 통역비 등),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을 포함하며 세부 사용용도 및 세부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2. 설치지원 정부지원금 : 취득설비 투자비 및 운영비를 대상으로 하며, 취득설비 투자비는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설계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을 포함하고, 운영비는 설비 운영을 위한 직접인건비, 소모품 등 비용을 포함한다.
3. 감축실적 구매 정부지원금 : 국제감축실적을 구매대상으로 하며, 선도 및 입찰 구매계약에 따른다.

③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기업의 장은 총 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민간부담금으로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한다.

제2장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

제4조(위탁·전담기관) 위탁·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선정, 최종평가 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국제감축사업의 총괄 관리·감독
4. 정부지원금의 집행·지도·감독 및 정산·환수
5. 기 추진한 설치 지원 국제감축사업의 후속 추진 관리 및 감축실적 확보·감축목표 활용 기여
6. 기 추진한 타당성조사 지원 국제감축사업의 설치 지원사업으로의 연계 및 후속 추진 관리
7. 국제감축사업 신규사업의 개발 및 수행 중인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연계, 기업 교육
8. 국내·외 홍보 및 설명회 운영
9. 기후변화 양자협정 체결 업무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10.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11.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12.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13.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14.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및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수행 중인 국제협력사업에 대해 국제감축사업과의 연계 지원
2. 국제감축실적의 감축목표 활용 기여
3. 신규 국제감축사업의 발굴

제6조(지원기업) ① 지원기업은 단일 국내기업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러 기업으로 구성할 경우 지원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을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위탁·전담기관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지원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
2. 지원사업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관리 및 행정 업무
3. 사업비의 관리·사용 및 실적보고
4. 지원사업 수행 과정의 조정 및 감독
5. 지원사업 중간 및 최종 결과의 보고
6.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성과의 보고·활용 및 설치 지원사업으로의 연계 추진
7. 설치 지원사업 성과의 보고·활용 및 국제감축실적의 확보·보고
8. 지원사업의 보안관리 및 윤리준수
9. 부정 행위 등 문제 발생시 위탁·전담기관에 보고
10. 기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수행책임자) ①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수행책임자”라 한다)는 지원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업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② 수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업계획서/제안서의 작성
2. 지원사업 수행 및 관리
3.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정산
4. 사업의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작성·제출
5.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수행책임자는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원사업과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이직,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3개월 이상 업무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출장, 파견, 교육훈련, 연수 등)
3. 기타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보안유지 의무) ① 본 지침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 포함)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1. 위탁·전담기관의 사업 신청서 및 자료를 취급하는 자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3. 그 외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자

③ 국제감축사업 신청기업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기반으로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운영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3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소지한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정책 및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2.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산업체 부장급 이상의 전문가
3.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가

4. 본 사업 담당 중앙행정공무원

5. 분야별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소유자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선정, 사업비 평가,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서 검토·평가·선정(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정)

2. 온실가스 감축 기술 검토·선정

3.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최종평가

4.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정부지원금 환수·관리 및 환수액 조정에 관한 사항

6. 국제감축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해 위탁·전담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력풀은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업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함

⑤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향후 위원회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⑥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 구성 명단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위원들이 안전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 이전에 계획서/제안서 등을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보안 유지를 위한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준수서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자료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심의방식은 대면회의, 화상회의,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심의 안전 및 환경적(코로나19 등 감염병) 요인을 고려하여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심의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⑥ 간사는 위탁·전담기관에서 지명하는 자가 담당하며 사전 검토 내용, 심의기준 및 자료 등을 출석위원에게 제공 및 설명하여 합리적인 심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⑦ 간사는 필요한 경우, 회의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참석자의 주요 발언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 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회 위원은 국제감축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신청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참석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준수서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국제감축사업 및 지원기업의 선정

제12조(선정방식) ①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 국제감축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공모사업 :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공개 모집하는 사업
2. 지정공모 사업 : 국내기업 등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정부간 협의 또는 합의의 이행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나. 그 외 국제감축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3. 정책지정 사업 : 국내기업 등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직접 타당성조사·설치를 수행·지원하였거나, 검토 중인 사업

나. 신청기업의 장이 신청한 사업 중 그 신청기업이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국제감축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경우,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파리협정 제6조 및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사업을 공고할 수 있고, 특정 부문 및 사업에 대해 가점 항목 및 배점을 별도 지정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환경부 및 위탁·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가. 국제감축사업 추진 기본방향

나. 국제감축사업의 범위 및 추진 일정

다. 해당년도 총 지원예산

라. 지원대상사업(사업유형)

마. 지원사업 대상기업 및 응모방법(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바. 지원 및 선정 절차

사. 기타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 지원금 지원 대상 국제감축사업을 상시 공고하거나 접수 받을 수 있다.

3.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정책의 시급성 및 신청서의 접수율 저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서 접수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기간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 및 위탁·전담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4.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문조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홍보 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정책지정사업의 경우,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 및 신청기업에 국제감축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신청 안내사항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모사업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6조에 따라 정책지정사업을 평가하고, 위탁·전담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 및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정 이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을 따른다.

제13조(사업의 신청) ① 설치 지원사업 신청기업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감축사업 개요, 추진 경위, 사업대상국 확인서, 인허가 등 추진 현황
2. 사업내용 및 효과(전체 사업비, 온실가스 감축량 및 지속가능발전 기여 등)
3.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사업기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4. 신청기업의 사업수행능력
5. 신청사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정보
6. 공동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공동수행 참여 의사 확인서
7. 그 밖에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②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신청기업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추진 경위, 기초조사 등 추진 현황
2. 사업내용 및 효과(전체 사업비, 온실가스 감축량 및 지속가능발전 기여 등)
3.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사업기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4. 신청기업의 타당성조사 수행능력
5. 신청사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정보
6. 공동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공동수행 참여 의사 확인서
7.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타당성조사 사업 및 설치 사업으로의 연계 동의
8. 그 밖에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③ 각 신청기업의 장은 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의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 마감 일시 내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 등의 제출은 공고 안내사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접수·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한 지원기업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의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신청한 지원기업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 여건의 사업일 경우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신청자격 및 제한) ① 국내기업 등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국제감축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2.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4. 휴·폐업 중인 경우
5.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법률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처분기간 만료일이 최근 3년 이내인 경우도 이와 같다)
6. 제26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7. 정부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9.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10.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사업신청서 사전검토)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제안서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여 사전검토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에게 사업계획서/제안서 등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현장심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심사만 진행할 수 있다.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현저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14조의 신청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 탈락시킬 수 있다.

④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신청서 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신청한 사업 내용 및 업체 현황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표에 점수를 기록한다. 심의위원회는 국제감축사업 사업계획서/제안서 및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및 사업비 총액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평가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한 신청사업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적격, 60점 미만이면 부적격으로 판정한다.

⑤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감축사업 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해 조정 절차를 거쳐 지원사업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고득점 순위에 따라 당해 연도 정부지원금 범위에서 지원대상을 분류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고려하고, 위원회 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⑦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선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의 협약 체결·변경 및 해약

제17조(협약의 체결)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평가결과 조정·확정 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지원기업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는 위탁·전담기관과 지원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협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서/제안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기업이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기업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위탁·전담기관은 평가결과 협약조건을 만족하는 차 순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거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⑦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의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수행책임자는 협약체결 후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위탁·전담기관에 협약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약의 변경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고서
2. 지원기업의 변경승인 요청 공문 (지원기업이 복수인 경우 모든 참여기업의 동의서 첨부)
3. 주관기업, 참여기업, 수행책임자, 사업기간, 사업비 등 협약 내용 변경 요청시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4. 기타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변경승인을 검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지원기업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승인 사항을 지원기업의 장과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④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 사업내용 및 지역·위치 등 사업수행에 중대한 변경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지원기업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기업, 수행책임자, 사업내용 및 지역·위치 등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간의 추진실적, 향후 사업추진계획,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등을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보고 결과가 “미진”한 경우 제23조제5항부터 제7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지 또는 해약에 관한 사항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부지원금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기업이 환경부장관 또는 위탁·전담기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항목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5. 지원기업이 국제감축사업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지원금의 집행 중지,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수행기관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전담기관은 국제감축사업과 지원기업을 새로이 선정할 수 있다.
- ③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 후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기각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상대국의 관련법령 제·개정, 위탁·전담기관의 사업취소 또는 계획변경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정부지원금의 관리

제20조(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된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70%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업에 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 제23조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사업수행의 계속 여부가 결정된 지원기업에 한하여 30%의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대상국 관련 부처로부터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사업참여 의향을 서면 확인 후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 제23조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 ② 지원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신청을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선급 반환 의무의 이행보증보험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지원기업의 장은 지원기업(또는 지원기업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전용계좌로 사업비를 청구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기업 및 참여기업별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④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위탁·전담기관(위탁·전담기관의 장)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지원기업의 장은 민간부담금의 경우에도 이 지침 제21조(정부지원금의 관리 및 사용) 등을 준용하여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하며, 예비 타당성조사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기업의 장은 위탁·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본 타당성조사 지원의 경우 이를 생략한다.

⑥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 결과 또는 설치 확인을 위해 관계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단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현장심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심사만 진행할 수 있다.

제21조(정부지원금의 관리 및 사용) ① 지원기업의 장은 정부지원금을 국제감축사업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제감축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 20% 이내 변경시에는 위탁·전담기관 장의 승인이 필요 없음
2. 국제감축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획득한 감축설비 및 조사결과를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지원기업의 장은 정부지원금을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이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정부지원금은 동일 계정 또는 통장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정부지원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 시설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정부지원금은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지원기업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제1항의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정부지원금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원기업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정부지원금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 및 위탁·전담기관의 요청일 이후 20일 이내에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당해 연도 정부지원금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위탁·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정산기관을 지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산을 실시한다.

1. 관련 법령 및 본 지침을 준수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기업의 장에 소명·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14일 이내에 소명·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정부지원금 정산결과에 대하여 지원기업의 소명·보완을 거친 후 정산 결과를 확정하고, 정산결과를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사업 외 사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산금액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⑥ 지원기업의 장은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원기업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부당집행액으로 발생한 정산금액 중 정부지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정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전담기관의 지정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하며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발생이자를 포함한 정산금액을 환수하여 국고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3조(사업의 진도관리)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계획 추진 현황, 추진성과, 사업비의 관리실태, 중간산출물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해 지원기업의 장에게 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업의 장은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③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 착수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진도관리를 위해 중간점검을 추진할 수 있으며, 중간점검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보고회, 기술자문회의 또는 현장점검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 ⑤ 현장점검에 관한 일정은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지원기업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⑥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 “미진” 사업에 대하여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 ⑦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의 보완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⑧ 진도관리 결과 사업수행 중단이 결정된 지원기업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 ⑨ 지원기업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또는 위탁·전담기관의 요청 이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를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개요
 - 2. 사업 수행의 내용 및 결과
 - 3.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발전기여 효과 등)
 -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 5.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본 사업 추진 가능성 / (설치 지원사업) 사업성과의 파급효과
 - 6.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사업대상국 관련 부처(중앙 또는 지방정부 등)의 파리협정 제 6조에 따른 사업참여 의향 확인 또는 협의 결과
 - 7. 분배된 또는 분배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 8. 기타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원기업의 장은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10부(원본1부, 사본9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원기업의 장은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제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 신고서를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이 사업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실패”로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5조(사업결과의 평가 및 조치)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결과 평가를 위해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 점수는 사업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으로 산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1. 최종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사업은 “성공”
2. 최종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사업은 “실패”
3. 최종평가지 천재지변, 상대국의 관련법령 제·개정, 위탁·전담기관의 사업취소 또는 계획변경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업 진행 불가시 “평가불가”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공”으로 판정된 사업은 종료하고, 제20조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및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등은 회수하여야 한다.
2. 제2항제2호에 따라 “실패”로 판정된 사업은 제26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위탁·전담기관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에 대하여 최종보고서의 미비 내용에 대한 설명, 수정·보완 또는 추가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위탁·전담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원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불가”로 판정된 사업은 종료하고, 제22조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 잔액 및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등은 회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현장심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심사만 진행할 수 있다.

④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합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점수 및 개별의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지원기업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위반사업 등에 대한 제재)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정부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라 협약의 해약이 된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사업평가결과 “실패”로 판정된 경우
3. 제36조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배임·횡령, 부정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사업기간 중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포함)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선정 및 수행·보고한 경우
6. 제23조에 따른 서약([별지 제7호 서식])을 위반한 경우
7. 기타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사업비 금액을 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국제감축사업과 관련하여 본 조의 제재 및 환수 조치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위탁·전담기관의 장에 보고해야 한다.

④ 지원기업의 장은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 신청) ① 제22조제6항, 제23조제8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는 지원기업의 장(이하 “이의 신청자”라 한다.)은 이의 신청서를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의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환수금) ① 정부지원금 환수통보를 받은 지원기업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환수금을 납부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악화의 사유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 또는 반납할 수 있다.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환수대상기관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할 수 있다.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를 받은 지원기업이 유예기간 중 환수금

납부가 가능해진 경우에는 즉시 환수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에게 정산결과 등에 따른 환수금 납부 독촉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후 종결하고,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 또는 징수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설치 지원사업의 국제감축실적 확보

제29조(성과물의 귀속) 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감축실적은 외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체결한 협정, 약정 등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업과 위탁·전담기관간에 분배 한다. 위탁·전담기관이 분배 받아야 하는 국제감축실적 총량은 정부지원금 대비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 및 [별표 6]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응조정,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 위한 취소 및 수익금 분배(행정비용, 적응기금)를 고려한다.
2.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확보가 가능한 국제감축사업 유형의 경우 국제감축실적 분배계획 대비 5% 이상 위탁·전담기관의 분배량이 낮은 경우 해당 기간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별표 6]의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단,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국제감축실적 분배량이 적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탁·전담기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 취득설비의 경우 협약기간 이후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처분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30조(모니터링보고서 작성 및 보고) ① 지원기업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설비 설치가 완료(종료)된 후 협약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축실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제19조제1항에 따른 협약의 중단 및 해제시에는 이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성과 등을 연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완료 후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장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조사결과의 확정 및 설치 지원사업 연계

제31조(결과의 확정)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최종 조사결과로 확정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제1항의 확정된 결과에 따라, 최종보고서(국문)를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상국 등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지원기업의 장은 최종보고서 요약본에 대해 국문, 영문 및 대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위탁·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번역의 오류 및 거짓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결과의 활용 및 관리)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최종보고서를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업이 보고서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비공개를 요청하여 인정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장 및 환경 현황 자료는 공익적 목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관리, 감독 등의 목적으로 정부기관의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업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3조(국제감축사업으로의 연계 추진) ①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제25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공”으로 판정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대해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또는 설치 지원사업으로 우선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또는 설치 지원사업으로의 연계 추진 시 지원사업 선정 및 최종 확정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을 따른다.

③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의 개발 추진 상황, 설치 지원사업으로의 연계 추진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이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업효과 제고 및 설치 지원사업으로의 연계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34조(사업정보의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기업별 사업의 정보 및 평가결과
2. 위원의 정보
3. 사업의 성과
4.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사업의 보안)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주요정보 및 영업비밀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행책임자에 대한 보안조치
2. 사업 수행관련 정보·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제36조(비밀유지 의무) 위탁·전담기관, 지원기업 등 사업 관계자는 사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7조(관련법령 등의 준수) ① 지원기업은 당해 사업의 이행과 관련된 법령·조례·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위탁·전담기관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고일 당시 대한민국 및 국제감축사업 수행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 지원기업은 대표자 및 고용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협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38조(양도의 금지)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상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 등을 환경부장관 또는 위탁·전담기관 장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9조(기타) ①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발행을 위한 사업등록, 모니터링, 검인증 절차는 정부간 협의에 따른 절차 및 양식을 적용한다.

부칙(2021. 12.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3.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적용된 사항은 기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2022. 7.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지원된 사업은 종전의 당해 지침에 따른다.

부칙(2023. 4.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지원된 사업은 종전의 당해 지침에 따른다.

부칙(2023. 8.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이 지침에 따라 지원된 사업은 개정 지침에 따른다.

② 제26조제1항 제6호는 시행일 이후 서약한 사업에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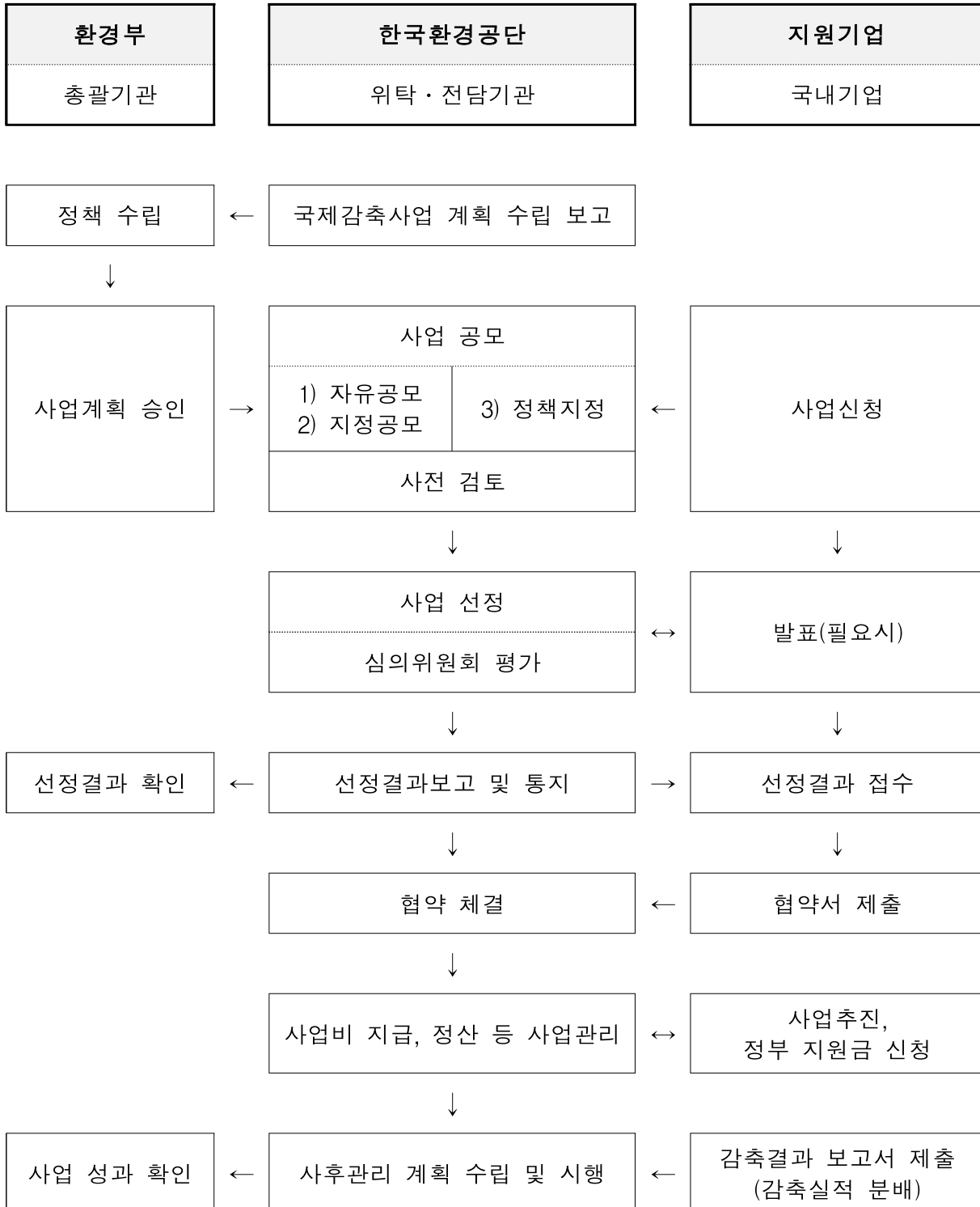


五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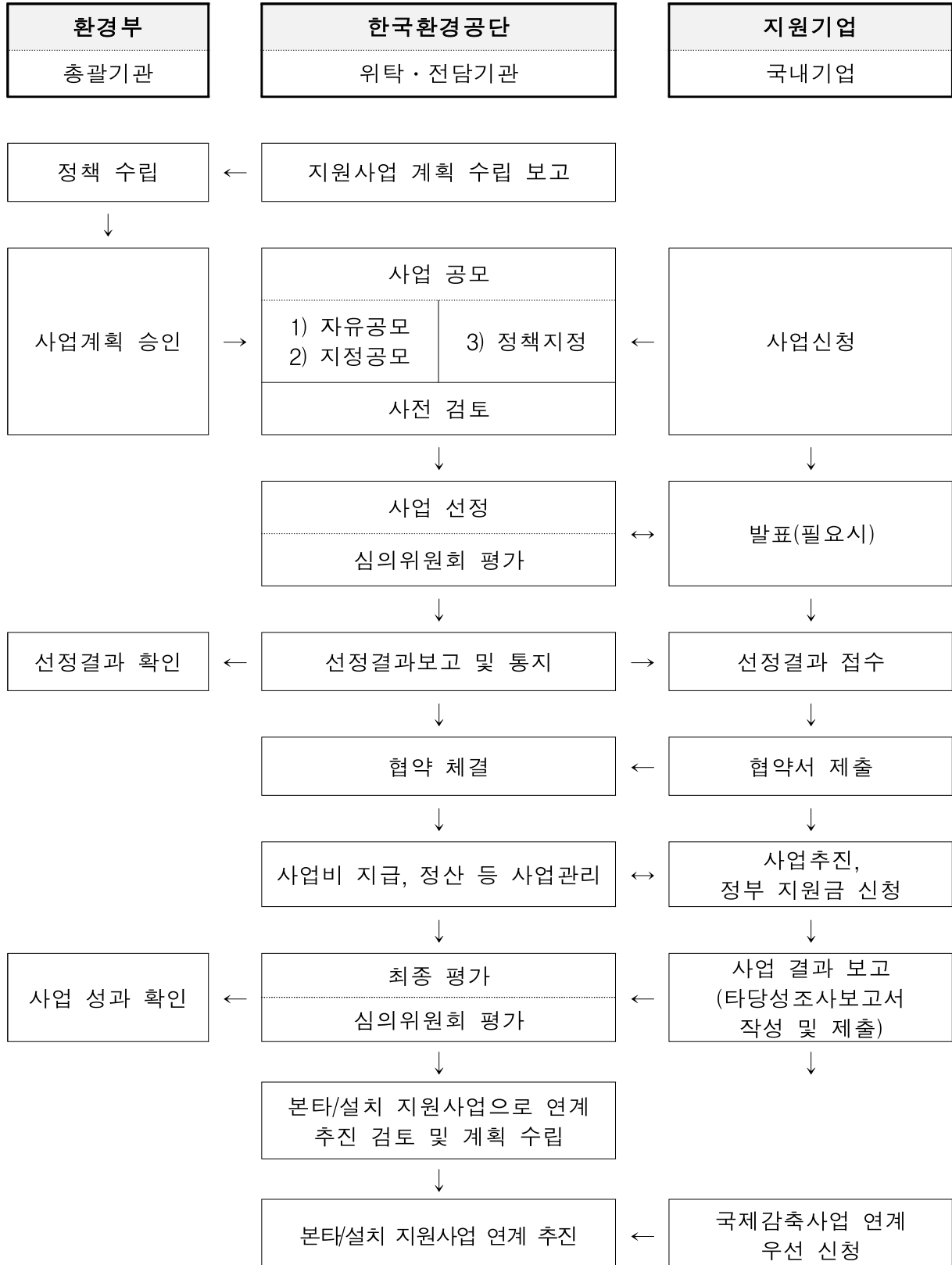


[별표 1의1]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절차 (설치 지원사업)

설치 지원사업 절차



[별표 1의2]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절차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절차



[별표 2] 제재등급 분류표

제재등급 분류표

1. 사업 참여 제한 조치 기준

| 구 분 | 주요 위반사항 | 조치기준 |
|-------------------|--|--------------|
| 정부지원금 지급이후 (협약기간) | ○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된 감축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
| | ○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
| | ○ 지원설비를 당초 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감축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
| | ○ 지원설비를 당초 계획(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 하였을 경우 | 사업참여제한 5년 |
| 공 통 | ○ 운영기관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 사업참여제한 3년 |
|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사업참여제한 5년 |
| | ○ 서약을 위반한 경우 | |

2.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기준

| 구 분 | 주요 위반사항 | 조치기준 |
|-----|--|----------------------------------|
| 공 통 | ○ 정부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
| | ○ 국제감축사업이 취소된 경우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
| | ○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업체가 감축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정부지원금의 50% 환수 |
| | ○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처분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액 환수) |
|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 서약을 위반한 경우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
| | ○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정부 지원금액 환수 |
| | ○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정부지원금 집행잔액 환수 |

[별표 3]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사업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기준

사업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기준

I. 일반원칙

- 사업비는 인건비, 경비로 구분하며 이를 비목이라 하고,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경비 비목내의 일반수용비·국내여비·국외여비·위탁용역사업비 등을 세목이라 한다.
- 지원기업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상품을 구매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정부지원금의 비목 및 세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탁·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세목 기준 20%이내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변경·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원기업은 지원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내용(보안각서 포함)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또는 금전등록영수증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할 수 있다.
- 수행책임자는 사업계획 상의 정부지원금 산출내역에 준하여 정부지원금을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전담기관이 정하는 제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II. 정산 공통사항

-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사업 변경 시 승인 결재서류), 정부지원금 집행명세서·비목별 정부지원금 사용내역서·비목 변경 승인서류·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인정 범위
 - 사업수행 중에 인건비가 변동되더라도 경비, 위탁용역사업비 등은 사업 계획서상의 편성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경우
 - 사업 계획서상의 예산과 정부지원금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비목 변경 승인 시 승인내용과 일치)한 경우
 - 정부지원금 비목 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한 경우
 - 회계절차 이행미숙 등으로 비목 해석 오류 시 사유서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 일괄집행 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 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불인정 범위

- 과세기관인 경우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관세, 부가세 등의 금액
- 개인 또는 기관 경비
- 자산가치가 있는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Ⅲ. 정부지원금 비목별 산정 및 정산기준

| 과 목 구 분 | | | 산정기준 |
|-------------|-----------|----------------|--|
| 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 |
| 인 건 비 | 보수 | 참여인력 급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의 급료로서 최근년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비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 참여인력은 타기관 연구사업을 포함하여 조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계획서 상의 참여인력 및 참여기간에 한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 ※ 참여인력 변경 시 위탁전담기관에 변경 신고 시점 이후 인정 ○ 계획서 상의 참여인력 및 참여기간에 한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40% 이내(현물부담 포함) * 위탁 전담기관 승인 하에 최대 60% 산정 가능 <p>[증빙] 보수내역(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계좌이체내역(인건비 입금)</p> |
| 경 비 | 일반 수용비 | 인쇄, 복사, 유인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된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등 ○ 안내, 홍보물 제작 <p>[증빙] 계약서, 결과물, 결의서(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p> |
| | | 전산 처리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프린터 등의 잉크, 토너구입비, 인쇄용지, CD 및 DVD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 ※ 자산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입비 제외 <p>[증빙] 구입 목록, 결의서(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p> |
| | | 시약, 재료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된 실험, 실습에 필요한 시약, 재료, 실험연료, 실험가운 등 소모성 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 자체 시험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외부 의뢰하는 분석료 <p>[증빙] 구입 목록, 분석의뢰서, 결과물, 결의서(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p> |
| | | 참가비, 자료구입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된 세미나(학회) 참가비, 도서 및 잡지 구입비 <p>[증빙] 지급목록, 구입목록, 결의서(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p> |
| | | 통번역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된 번역료, 국제세미나 워크숍 등의 통역비 <p>[증빙] 계약서, 결과물, 결의서(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수령확인증)</p> |
| | | 자문료, 참석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초청 자문료 ○ 보고회 등에 자문위원 또는 평가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 <p>[증빙] 자문일시·장소·목적·내용·전문가서명 자문의견서, 결의서(계좌이체내역, 수령확인증)</p> |

| 과 목 구 분 | | | 산정기준 |
|---------|-----------------|---------------|--|
| 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 |
| 경비 | 공공 요금 | 통신비, 수수료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금수수료, 택배비, 보증증권, 각종 수수료 등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된 우편요금, 전화요금, 국외출장시 로밍요금 등 [증빙] 결의서(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
| | 임차료 | 임차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된 특수 실험 실습 기구 등을 외부로부터 임차 ○ 공청회, 세미나, 포럼, 보고회 등 회의장 사용 ○ 국내외 출장시 차량 임차료, 와이파이 에그 등 산정 [증빙] 견적서, 계약서, 결의서(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
| | 업무 추진비 | 업무 추진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과회 물품(음료, 다과 등) 구입, 회의비용 및 오찬, 만찬비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한도에 따름 [증빙] 일시·장소·목적·내용·참석자 서명 회의록, 결의서(영수증) |
| | 위탁 용역 사업비 | 외주 용역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에 사유서 제출 (외주용역 필요성, 외주기업의 일반사항, 외주기업의 관련 수행경험, 참여인력의 경력 또는 자격 확인 가능한 서류) ○ 총 사업비의 30% 이내 * 위탁·전담기관 승인 하에 최대 50% 산정 가능 ○ 국외기관이 사용한 사업비 정산 시 해당기관의 확인서로 대체 가능 [증빙] 계약서, 결과보고서, 결의서(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확인서) |
| | 국내 여비 | 국내 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 있는 국내여비 ○ 출장자(참여인력)에게 참여기간에 한해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 제2호]에 따름 ○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철도, 선박) 1) 자가용 출장 시 사업 수행상 불가피(산간오지, 도서벽지 등)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연료비, 통행료 영수증 첨부한 경우, 유사 구간 철도/버스운임으로 지급 2) 업무추진비로 식비 사용한 경우, 출장여비의 해당 식비 감액 3) 택시, 시내버스, 전철 요금 제외 4) 공용차량 또는 임차차량 이용할 경우 일비의 50% 감액 [증빙] 출장복명서(목적, 출장자, 기간, 출장지), 결의서(영수증, 계좌이체내역) |
| | 국외 여비 | 국외 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 있는 국외여비 ○ 출장자(참여인력)에게 참여기간에 한해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4 제5호]에 따름 ○ 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운임 1) 업무추진비로 식비 사용하거나, 기내식 제공받은 경우, 출장여비의 해당 식비 감액 2) 비자발급 등 행정비용, 여행자보험, 장비대상 보험, 예방접종비 등 산정 지급 3) 대상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등 관련 공무원 초청여비 산정 4) 차량, 와이파이 에그 등 임차는 임차료 세목으로 산정·집행, 통역비는 일반수용비 세목으로 산정·집행 5) 공용차량 또는 임차차량 이용할 경우 일비의 50% 감액 [증빙] 출장복명서(목적, 출장자, 기간, 출장지), 결의서(영수증, 계좌이체내역) |
| 일반관리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원사업의 주관 및 참여기업의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준용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일반관리비율(6% 이내, 제1항17호) |
| 이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원사업의 주관 및 참여기업의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준용 - 이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이윤율(10% 이내, 제2항4호) |
| 부가가치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원사업의 주관 및 참여기업 수행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 부가세법 제4조 제1호 (주관 및 참여기업이 사업자이며,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부가세율(10%) |

* 세목 기준 20% 이상 변경 시 위탁·전담기관 사전 승인 필요

[별표 4의1] 국제감축사업 선정평가 기준 (설치 지원사업)

설치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 **정성평가** (사업의 적정성, 사업화 가능성, 감축실적 확보의 적정성, 사업의 경제성)

| 평가항목 (배점) | 배점기준 | | | | |
|--|--|---------------|----------------------------------|----------------|---------------------|
| 사업의 적정성 (35점) | (1)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 (5점) | | | | |
| | 4건 이상 | 3건 이상 | 2건 이상 | 1건 이상 | 없음 |
| | 5 | 4 | 3 | 2 | 1 |
| | (2) 지속가능발전기여 (5점) | | | | |
| | 4건 이상 | 3건 이상 | 2건 이상 | 1건 이상 | 없음 |
| | 5 | 4 | 3 | 2 | 1 |
| | ①정책 일관성 ②환경영향평가 ③오염제어 ④안전보건 ⑤환경 및 생물다양성 ⑥경제·사회 환경 및 지역사회 참여 ⑦기술 등 | | | | |
| | (3) 사업대상국 의향서 확보여부 (15점) | | | | |
| | 파리협정 제6조 사업 참여의향(중앙정부), 인허가 (토지사용, 사업권, 운영권 등) | | 파리협정 제6조 사업 참여의향 (중앙 또는 지방정부) | | 없음 |
| | 15 | | 9 | | 1 |
| (4) 사업대상국 온실가스 국제감축 양자협력 추진사례 (5점) | | | | | |
|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사업 양자협력 사례 있음 (스위스, 스웨덴, 일본 등) | | 감축사업 양자협력 추진중 | | 없음 | |
| 5 | | 3 | | 1 | |
| (5) ITMO 활용 가능성-사업대상국 NDC 국제탄소시장 활용 언급여부 (5점) | | | | | |
| 활용 명시 (파리협정 제6조 활용) | | 유보 | 미활용/ 언급 없음 | | |
| 5 | | 3 | 1 | | |
| 사업화 가능성 (30점) | (1) 사업추진 단계 (10점) | | | | |
| | 인허가 및 설계 완료 | 사업권 확보 | 구속력 있는 협약체결 | 구속력 없는 협약체결 | 대상국 정부에서 사업제안 요청 |
| | 10 | 8 | 6 | 4 | 2 |
| | (2) 투자구조 및 자본조달의 적정성 (5점) | | | | |
| | 금융 약정 | 계약서 협의 | 투자확약서 | 투자의향서 | 없음, 기타 |
| | 5 | 4 | 3 | 2 | 1 |
| | 정부지원금 외 민간부담금(투자비, 연간 운영비)의 확보를 위한 투자구조 파악 | | | | |
| | (3) 주요 매출 및 비용 사용계획의 적정성 (5점) | | | | |
| | 계약 체결 | 조건 협의 | 계약당사자 파악 | 매출 및 비용 신정 | 미흡, 기타 |
| | 5 | 4 | 3 | 2 | 1 |
| (4) 적용기술의 적정성 (5점) | | | | | |
| 특허, 신기술 등 소유/사용권 확보 | 기술사용 협의 | 기술소유권자 파악 | 기술 활용 가능성 검토 | 미흡, 기타 | |
| 5 | 4 | 3 | 2 | 1 | |
| (5) 기존 유사 감축사업 사례 (5점) | | | | | |
| 10건 이상 | 7건 이상 | 5건 이상 | 3건 이상 | 3건 미만 | |
| 5 | 4 | 3 | 2 | 1 | |
| CDM, JI 등 기존 유사 감축사업 사례 | | | | | |

| 평가항목 (배점) | 배점기준 (예시) | | | | |
|------------------------------------|---------------------------------|-------------------------------------|---------------------------|-------|-----------------------|
| 감축실적 확보의 적정성 (15점) | (1) 방법론 적용의 적정성 (5점) | | | | |
| | 적용 방법론 명확 | | 방법론 개정 필요 | | 신규 방법론 개발 필요 |
| | 5 | | 3 | | 1 |
| | (2)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5점) | | | | |
| | 측정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감축량 구체적·현실적 산정 | | 감축량 산정 및 이론적 근거 개괄적 제시 | | 감축량 산정방법 제시, 근거 부족 |
| | 5 | | 3 | | 1 |
| (3) 모니터링 계획의 적정성 (5점) | | | | | |
| 모니터링 기간, 지점, 수집할 데이터 목록 등 계획 제시 | | 모니터링 기간, 지점, 수집할 데이터 목록 등 일부 불명확 | | 계획 미흡 | |
| 5 | | 3 | | 1 | |
| 사업의 경제성 (20점) * 상대평가 | (1) 총 감축량 규모 (10점) | | | |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10 | 8 | 6 | 4 | 2 |
| | (2) 톤당 감축비용 (10점) | | |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10 | 8 | 6 | 4 | 2 | |

정량평가 (가점, 최대 2점, 우선협력 후보국 여부)

| 평가항목 (가점) | 기준 | | |
|---------------------|----------------------|------|--|
| 우선협력후보국 여부 (+2점) | (1) 우선협력후보국 여부 (+2점) | | |
| | A그룹 | | B그룹 |
| | +2 | | +1 |
| | 그룹 | 대륙 | 국가 |
| | A (15개국) | 아시아 | 베트남,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파키스탄, 인도, 우즈베키스탄 |
| | | 중남미 | 페루,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
| | | 아프리카 | 에티오피아, 알제리, 가봉 |
| | B (19개국) | 아시아 | 네팔, 카자흐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제르바이잔, 스리랑카,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 |
| | | 중남미 |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
| | | 아프리카 | 우간다, 가나, 모잠비크, 세네갈, 탄자니아, 르완다, 모로코 |

[별표 4의2] 국제감축사업 선정평가 기준 (예비/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 **정량평가** (신청기업 적정성)

| 평가항목 (배점) | 배점기준 | | | | | |
|--|--|--------|------------------|-------------------|-----------------|---------|
| 신청기업 적정성 (40점)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사업비 배분비율에 따라 산정 | (1) 해외사업 수행 실적 (10점) | | | | | |
| | 4건 이상 | 3건 이상 | 2건 이상 | 1건 이상 | 없음 | |
| | 10 | 8 | 6 | 4 | 2 | |
| | 공고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신청기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실적 [증빙] 해외공사수주실적확인서(해외건설협회), 발주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중 택1 | | | | | |
| | (2)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실적 (15점) | | | | | |
| | 4건 이상 | 3건 이상 | 2건 이상 | 1건 이상 | 없음 | |
| | 15 | 12 | 9 | 6 | 3 | |
| | 공고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신청기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실적 [증빙] 해외공사수주실적확인서(해외건설협회), 발주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중 택1 | | | | | |
| | (3) 수행책임자의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경험 (5점) | | | | | |
| | 4건 이상 | 3건 이상 | 2건 이상 | 1건 이상 | 없음 | |
| 5 | 4 | 3 | 2 | 1 | | |
| 공고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수행책임자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실적 [증빙] 해외공사수주실적확인서(해외건설협회), 발주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중 택1 | | | | | | |
| (4)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점) | | | | | | |
| 구분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신용 평가 등급 | 회 사 채 | A- 이상 | A- 미만 BBB- 이상 | BBB- 미만 BB- 이상 | 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 | 기업어음 | A2- 이상 | A2- 미만 A3- 이상 | A3- 미만 B0 이상 | B- | C 이하 |
| | 기업신용평가 | A- 이상 | A- 미만 BBB- 이상 | BBB- 미만 BB- 이상 | 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 등급별 배점 | | 10 | 8 | 6 | 4 | 2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제4호 및 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 마감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단,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산정) [증빙] 공고마감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관련 서류 | | | | | | |

□ **정성평가** (사업화 가능성, 기대효과)

| 평가항목 (배점) | 배점기준 | | | | | | | | | | |
|--|--|-------|----|-------|-------|-------|----|----|---|---|---|
| 사업화 가능성 (40점) | <p>(1) 사업의 적정성 (15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매우 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매우 미흡</td> </tr> <tr> <td>15</td> <td>12</td> <td>9</td> <td>6</td> <td>3</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 개요 및 추진경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정성 평가</p>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15 | 12 | 9 | 6 | 3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 | | |
| | 15 | 12 | 9 | 6 | 3 | | | | | | |
| | <p>(2) 사업 추진 가능성 (10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매우 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매우 미흡</td> </tr> <tr> <td>10</td> <td>8</td> <td>6</td> <td>4</td> <td>2</td> </tr> </table> <p>①사업대상국 온실가스 국제감축 양자협력 추진사례 ②ITMO활용 가능성-사업대상국 NDC 국제탄소시장 활용 언급여부 ③사업대상국 의향서 및 인허가 확보 여부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 평가</p>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10 | 8 | 6 | 4 | 2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 | | |
| | 10 | 8 | 6 | 4 | 2 | | | | | | |
| | <p>(3) 타당성조사 계획 (10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매우 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매우 미흡</td> </tr> <tr> <td>10</td> <td>8</td> <td>6</td> <td>4</td> <td>2</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타당성조사 계획의 필요성, 적정성, 구체성, 명확성 등 평가</p>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10 | 8 | 6 | 4 | 2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 | | |
| | 10 | 8 | 6 | 4 | 2 | | | | | | |
| | <p>(4) 사업 경제성 분석 (5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매우 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매우 미흡</td> </tr> <tr>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 개요, 시장 현황,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 시 예상되는 경제성 평가</p>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5 | 4 | 3 | 2 | 1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 | | | |
| 5 | 4 | 3 | 2 | 1 | | | | | | | |
| 기대효과 (20점) | <p>(1) 온실가스 감축효과 (15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매우 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매우 미흡</td> </tr> <tr> <td>15</td> <td>12</td> <td>9</td> <td>6</td> <td>3</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감축량 도출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대상국의 환경여건 파악을 통해 국제감축사업 연계시 확보 가능한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평가</p>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15 | 12 | 9 | 6 | 3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 | | |
| | 15 | 12 | 9 | 6 | 3 | | | | | | |
| <p>(2) 지속가능발전기여 (5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매우 우수</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매우 미흡</td> </tr> <tr>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able> <p>①정책 일관성 ②환경영향평가 ③오염제어 ④안전보건 ⑤환경 및 생물다양성 ⑥경제·사회 환경 및 지역사회 참여 ⑦기술 등</p>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5 | 4 | 3 | 2 | 1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 | | | |
| 5 | 4 | 3 | 2 | 1 | | | | | | | |
| | | | | | | | | | | | |

[별표 5의1] 최종평가 기준 (설치 지원사업)

설치 지원사업 최종평가 기준

정성평가 (사업성과, 노력도, 사후관리)

| 평가항목 (배점) | 배점기준 | | | | |
|--|--|----|----|-------|-------|
| 사업성과 (50점) | (1) 감축설비 설치·운영 적절성 (20점) | | | |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20 | 16 | 12 | 8 | 4 |
| | 계획 대비 설치·운영의 적절성을 평가 | | | | |
| | (2) 목표 달성 정도 (30점) | | |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30 | 24 | 18 | 12 | 6 | |
| 예상 감축량 목표 대비 감축실적 확보 정도를 평가 | | | | | |
| 노력도 (25점) | (1) 사업비 집행 적정성 (15점) | | | |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15 | 12 | 9 | 6 | 3 |
| | 사업비 사용 계획 및 집행내역, 실적보고의 적정성 평가 | | | | |
| | (2) 추진방법 및 과정 적극성 (10점) | | |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10 | 8 | 6 | 4 | 2 | |
| 추진 과정 상 문제 및 어려움의 해결 노력도 평가 | | | | | |
| 사후관리 (25점) | (1) 향후 감축실적 확보 계획 (20점) | | | |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20 | 12 | 9 | 6 | 3 |
| | 연차별 확보 계획의 명확성, 향후 지속적인 감축실적 확보 가능성 평가 | | | | |
| | (2) 지속가능발전 기여 (5점) | | |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5 | 4 | 3 | 2 | 1 | |
| ①정책 일관성 ②환경영향평가 ③오염제어 ④안전보건 ⑤환경 및 생물다양성 ⑥경제·사회 환경 및 지역사회 참여 ⑦기술 등 | | | | | |

[별표 5의2] 최종평가 기준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최종평가 기준

정성평가 (사업의 적정성, 국제감축사업 연계 추진 가능성, 사업의 경제성, 가점)

| 평가항목 (배점) | 배점기준 | | | | | | | | | | |
|---|--|-------|----|-------|-------|-------|----|----|---|---|---|
| 사업의 적정성 (60점) | (1) 사업의 기초조사 (10점)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매우 우수</td> <td style="width: 20%;">우수</td> <td style="width: 20%;">보통</td> <td style="width: 20%;">미흡</td> <td style="width: 20%;">매우 미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able>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10 | 8 | 6 | 4 | 2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 | | |
| | 10 | 8 | 6 | 4 | 2 | | | | | | |
| | 대상국 사업 환경 검토, 현지 유사사업 동향, 법령, 제도 등 정책,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기초조사의 적정성 평가 | | | | | | | | | | |
| (2) 기술적 타당성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적용 기술 (20점)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매우 우수</td> <td style="width: 20%;">우수</td> <td style="width: 20%;">보통</td> <td style="width: 20%;">미흡</td> <td style="width: 20%;">매우 미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able>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20 | 16 | 12 | 8 | 4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 | | | |
| 20 | 16 | 12 | 8 | 4 | | | | | | | |
| 방법론 선정·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예상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국내·외 기술수준 분석,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사용권 확보 검토 | | | | | | | | | | | |
| (3) 경제적 타당성 : 설치·운영비 산정 및 민감도 분석 (20점)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매우 우수</td> <td style="width: 20%;">우수</td> <td style="width: 20%;">보통</td> <td style="width: 20%;">미흡</td> <td style="width: 20%;">매우 미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able>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20 | 16 | 12 | 8 | 4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 | | | |
| 20 | 16 | 12 | 8 | 4 | | | | | | | |
| 타당성조사 계획의 필요성, 적정성, 구체성, 명확성 등 평가 | | | | | | | | | | | |
| (4) 리스크 분석 (10점)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매우 우수</td> <td style="width: 20%;">우수</td> <td style="width: 20%;">보통</td> <td style="width: 20%;">미흡</td> <td style="width: 20%;">매우 미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able>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10 | 8 | 6 | 4 | 2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 | | | |
| 10 | 8 | 6 | 4 | 2 | | | | | | | |
| 국가 정책, 법,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리스크 분석 및 해소방안 수립 | | | | | | | | | | | |
| 국제감축사업 연계 추진 가능성 (30점) | (1) 사업 추진의 준비성 (15점)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매우 우수</td> <td style="width: 20%;">우수</td> <td style="width: 20%;">보통</td> <td style="width: 20%;">미흡</td> <td style="width: 20%;">매우 미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able>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15 | 12 | 9 | 6 | 3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 | | |
| | 15 | 12 | 9 | 6 | 3 | | | | | | |
| 사업대상 지역 및 위치, 기술 선정 구체화를 통한 감축사업 모델 도출의 준비성 | | | | | | | | | | | |
| (2) 사업비 집행 적정성 (10점)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매우 우수</td> <td style="width: 20%;">우수</td> <td style="width: 20%;">보통</td> <td style="width: 20%;">미흡</td> <td style="width: 20%;">매우 미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able>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10 | 8 | 6 | 4 | 2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 | | | |
| 10 | 8 | 6 | 4 | 2 | | | | | | | |
| 사업비 사용 계획 및 집행내역, 실적보고의 적정성 평가 | | | | | | | | | | | |
| (3) 지속가능발전기여 (5점)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매우 우수</td> <td style="width: 20%;">우수</td> <td style="width: 20%;">보통</td> <td style="width: 20%;">미흡</td> <td style="width: 20%;">매우 미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able>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5 | 4 | 3 | 2 | 1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 | | | |
| 5 | 4 | 3 | 2 | 1 | | | | | | | |
| ①정책 일관성 ②환경영향평가 ③오염제어 ④안전보건 ⑤환경 및 생물다양성 ⑥경제·사회 환경 및 지역사회 참여 ⑦기술 등 | | | | | | | | | | | |
| 사업의 경제성 (10점) * 상대평가 | (1) 총 감축량 규모 (5점)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매우 우수</td> <td style="width: 20%;">우수</td> <td style="width: 20%;">보통</td> <td style="width: 20%;">미흡</td> <td style="width: 20%;">매우 미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able>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5 | 4 | 3 | 2 | 1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 | | |
| 5 | 4 | 3 | 2 | 1 | | | | | | | |
| (2) 톤당 감축비용 (5점)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매우 우수</td> <td style="width: 20%;">우수</td> <td style="width: 20%;">보통</td> <td style="width: 20%;">미흡</td> <td style="width: 20%;">매우 미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able>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5 | 4 | 3 | 2 | 1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 | | | |
| 5 | 4 | 3 | 2 | 1 | | | | | | | |

정량평가 (가점, 최대 10점, MOU 체결 여부)

| 평가항목 (가점) | 기준 |
|------------------|---|
| MOU 체결 (+10점) | (1)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사업참여 의향 확보 (+5점) (2) 사업위치, 기술, 내용, 지원의사 등 포함(+5점) |

[별표 5의3] 최종평가 기준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최종평가 기준

정성평가 (사업의 적정성, 국제감축사업 연계 추진 가능성, 사업의 경제성, 가점)

| 평가항목 (배점) | 배점기준 | | | | |
|---|---|---------------------|------------------------|---------------------|----------------------|
| 사업의 적정성 (60점) | (1) 타당성조사의 적정성 (10점) | | | |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10 | 8 | 6 | 4 | 2 |
| | ①국가 정책,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 결과 ②법·제도·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리스크 해소방안 ③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조사의 적정성 평가 | | | | |
| | (2) 설치사업을 위한 설계 등 진전도 (30점) : 제반사항 추진의 적정성 | | | |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30 | 24 | 18 | 12 | 6 |
| | 관련법률, 정책조사 | 사업부지 측량, 지질·지반조사 | 매립지 폐기물 성상 및 폐수 수질조사 등 | 온실가스 감축량 전문가 검증 | 사업권 확보 |
| | 인허가 취득 | 사업비(초기투자비, 운영비) 구체화 | 재무 분석 및 전문가 자문 | 세부 리스크 파악 및 회피방안 도출 | 사업추진구도 (EPC/O&M) 적절성 |
| | 자금조달의 안정성, 적절성 검증 | 적용기술 및 공정계획 수립 | 시설물 배치 및 설비내역 산출 | 공사 및 설비운영 구체적 계획 수립 | 이해관계자 간 감축실적 협상 |
| (3)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계획 (20점) | | | |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20 | 16 | 12 | 8 | 4 | |
| 연차별 확보 계획의 명확성, 향후 지속적인 감축실적 확보 가능성 평가 | | | | | |
| 국제감축사업 연계 추진 가능성 (30점) | (1) 사업 추진의 준비성 (15점) | | | |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15 | 12 | 9 | 6 | 3 |
| | 사업대상 지역 및 위치, 기술 선정 구체화를 통한 감축사업 모델 도출, 설치비 및 운영비의 민간부담금 확보 등 투자방안 마련의 준비성 | | | | |
| | (2) 사업비 집행 적정성 (10점) | | | |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10 | 8 | 6 | 4 | 2 |
| | 사업비 사용 계획 및 집행내역, 실적보고의 적정성 평가 | | | | |
| | (3) 지속가능발전기여 (5점) | | | |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5 | 4 | 3 | 2 | 1 | |
| ①정책 일관성 ②환경영향평가 ③오염제어 ④안전보건 ⑤환경 및 생물다양성 ⑥경제·사회 환경 및 지역사회 참여 ⑦기술 등 | | | | | |
| 사업의 경제성 (10점) * 상대평가 | (1) 총 감축량 규모 (5점) | | | |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5 | 4 | 3 | 2 | 1 |
| | (2) 톤당 감축비용 (5점) | | | |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5 | 4 | 3 | 2 | 1 |

정량평가 (가점, 최대 10점, MOU 체결 또는 사업권 확보 여부)

| 평가항목 (가점) | 기준 |
|-------------------------------|---------------------------------------|
| MOU 체결 또는 사업권 확보 (+10점) | (1)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사업참여 의향 확보 (+5점) |
| | (2) 사업위치, 기술, 내용, 지원의사, 사업권 등 확보(+5점) |

[별표 6] 국제감축실적 분배 기준

국제감축실적 분배 기준

□ 사업 유형별 정의 및 분배 원칙

| 구 분 | 정의 | 감축실적 분배 |
|-------------------------|--|---|
|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확보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감축실적 이외 발전, 폐기물 처리 등으로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지원기업은 국제감축실적을 활용해 정부지원금 대비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분배 (보상) 지원기업은 분배량이 목표대비 5%이상 낮은 경우 추가 수익의 최대 50%범위 내 국제감축실적으로 위탁 · 전담기관에 제출 |
| 국제감축실적 확보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립가스 소각사업과 같이 국제감축실적 외 추가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지원기업은 국제감축실적을 활용해 정부지원금 대비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분배 |

[별표 7] 대상국 의향서 작성 필수요건

대상국 의향서 작성 필수요건

| 구분 | 필수요건 | 내 용 |
|----------|-------------------------------------|---|
| 발신주체 | 대상국 관련 부처 국장급 이상 성명, 직급, 부서명, 주소 | 관련 부처 : 산업부, 투자무역부, 환경부, 에너지부 등 중앙정부 내 관계 부서 (예시) 환경부 기후변화국 |
| 수신처 | 기업 또는 환경부 | 기업 : 지원기업 또는 주관-참여기업 컨소시엄 환경부 : 한국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
| 의향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사업 참여 | |
| 사업 설명 | 사업명 수행기업 사업기간 수행 단계 | 수행단계 : 타당성조사, 측정 또는 설치 등 |



별지 서식



비밀준수서약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의 비밀 준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참여를 통해 알게 되는 제반 비밀을 준수할 것이며 위반 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 서약서

본인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업체 선정·평가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의1 서식]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설치 지원사업)

| | | | | | |
|-----------------------------|---------------|---------------|--|--|--|
| | | | 접수번호 | | |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 | | | | |
| 기본정보 (신청기업 정보관리)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 표 자 명 | | 법인등록번호 | | |
| | 기 업 구 분 | |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 | |
| | 업 종 | | | | |
| | 사무소 | 주 소 | | | |
| | | 전 화 | | FAX | |
| | 설치지 | 대상국명 | | | |
| | | 주 소 | | | |
| | 수행책임자 | 전 화 | | FAX | |
| | | 담당자명 | | 부서/직책 | |
| e-mail | | 연 락 처 | | | |
| 신청정보 | 국제감축사업명 | | | | |
| | 총 사업비 (천원) | 정부지원금 (천원) | | 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 ₂ e/yr) | |
| | | 민간부담금 (천원) | | | |
| | 사업 유형 | | 국제감축실적 톤당 감축비용 | 총사업비/(투자비+운영비) 대비 총 감축량 | |
| 예상 사업기간 | | 감축실적 이전기간 | | | |
| 위와 같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신청합니다. | | | | | |
| 신청기업 (직인) | | | | | |
|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 | | | |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설치 지원 사업계획서

| | |
|------|--|
| 신청기업 | |
|------|--|

20 . .

사업계획 요약

| | | | |
|--------|------------------------|----|--|
| 사업명 | | 분야 | |
| 신청기업 | | | |
| 지원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개월) | | |
| 협약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개월) | | |
| 인증유효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개월) | | |

※협약기간, 인증유효기간의 경우 국제감축사업 기간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구분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
|---------|------|-------|-------|----------|
| | | | 신청기업 | 합계 |
| 금액 (천원) | | | (현금) | |
| | | | (현물) | |
| 비율 (%) | 100 | | (현금) | 민간부담금 기준 |
| | | | (현물) | |

1. 사업 개요

-
-

2. 베이스라인 및 적용 방법론

-
-

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

4. 모니터링 계획

-
-

5. 지속가능발전 기여 등

-
-

(사업계획 요약서는 1page 이내로 작성)

※ 양식 및 내용 일부 수정 가능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목적 및 적용기술에 대한 설명

- 사업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배출원 및 적용 기술을 설명
- 사업목적은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기술
- 사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방법 등을 기술

1.2 사업 위치

| | |
|----------------|--|
| 국가, 지역 | |
| 주소 | |
| 지역적 위치(위도, 경도) | |

- 사업 위치는 해당 사업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를 명확히 기술(지도 포함)

1.3 사업참여자

| 구 분 | 사업자 명 |
|---------|-------|
| 사업참여자 1 | |
| 사업참여자 2 | |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참여자 기술

1.4 사업 시작일

| | |
|--------|--|
| 사업시작일 | |
| 인증유효기간 | |

- 사업 시작일은 사업 시행 후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한 날 기술
- 인증 유효기간은 해당 사업을 통해 감축실적이 발행되는 전체 기간 기술

1.5 환경건전성 평가

- 해당 사업이 다른 국제 온실가스 감축메커니즘에 등록되지 않았음을 기술

2. 베이스라인 및 적용 방법론

2.1. 적용방법론

| | |
|------|--|
| 방법론명 | |
|------|--|

- 해당 사업에 적용된 방법론명 기술
- ※ 국제감축협약의 방법론 승인 이전임에 따라 CDM 등 기존 감축메커니즘 방법론 적용

2.2. 방법론 선정 타당성

- 해당 사업이 적용된 방법론 적용 조건을 모두 충족함을 기술

2.3 사업 경계

| 배출원 | | 온실가스 | 포함여부 (O, x) | 배출원 설명 |
|---------------|-------|------|----------------|--------|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배출원 1 | | | |
| | | | | |
| | 배출원 2 | | | |
| | | | | |
| 사업활동 | 배출원 1 | | | |
| | | | | |
| | 배출원 2 | | | |
| | | | | |

- 사업에 영향을 받는 물리적인 사업의 경계를 기술하고, 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원 및 감축시설 관련 정보(사진, 시설, 공정도 등) 제시
- 베이스라인 배출원 및 사업활동을 구분하여 제시

2.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정의

-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해당 사업의 가장 합리적인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기술
- 시나리오 선정 절차와 논리 설명

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3.1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

-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을 위한 수식과 수식에 포함된 인자, 계수 설명

3.2 사업배출량 산정

-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사업 배출량 산정을 위한 수식과 수식에 포함된 인자, 계수 설명

3.3 누출량 산정

-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누출량 산정을 위한 수식과 수식에 포함된 인자, 계수 설명

3.4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수식과 수식에 포함된 인자, 계수 설명

3.5 고정 데이터 및 인자

| | |
|--------|--|
| 데이터/인자 | |
| 단 위 | |
| 설 명 | |
| 출 처 | |
| 적 용 값 | |
| 측정절차 | |
| 데이터 목적 | |
| 기타 의견 | |

- 사업기간 동안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누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하지 않아도 되는 고정 값을 가지는 인자 제시

3.6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앞서 제시된 온실가스 산정식에 인자, 계수를 적용하여 인증유효기간 동안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제시

| 연 도 | 베이스라인 배출량 (tCO ₂ -eq) | 사업배출량 (tCO ₂ -eq) | 누출량 (tCO ₂ -eq) | 감축량 (tCO ₂ -eq) |
|---------------------|----------------------------------|------------------------------|----------------------------|----------------------------|
| Year 1 | | | | |
| Year 2 | | | | |
| Year 3 | | | | |
| ... | | | | |
| 총 예상감축량 | | | | |
| 인증 유효기간 | | | | |
|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연평균 감축량 | | | | |

■ 적용한 방법론에 따라 산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배출량, 누출량, 감축량을 하나의 표로 작성

4. 모니터링 계획

4.1 변동 데이터 및 인자

| | |
|----------|--|
| 데이터/인자 | |
| 단 위 | |
| 설 명 | |
| 출 처 | |
| 적 용 값 | |
| 모니터링 주기 | |
| 측정 방법/절차 | |
| QA/QC | |
| 데이터 목적 | |
| 기타 의견 |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인자 중 인증유효기간 동안 실제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 변동 데이터 및 인자를 모두 제시하고, 설명

■ 모니터링 지점을 보여주는 도식도 삽입

4.1.1 샘플링 계획

■ 모니터링 인자 중 샘플링 방식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 경우 샘플링 방식과 절차에 대해 기술

4.2 모니터링 계획 설명

■ 모니터링을 위한 운영 및 관리상 구조를 설명하고 자료 수집·보관 방법, 품질관리 절차 등을 기술

5. 지속가능발전 기여

■ 해당 사업이 대상국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여부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 번호 | 항목 | 확인 사항 | 해당여부 (O/x) | 설명 |
|----|---------------------------|---|------------|----|
| 1 | 정책일관성 | 사업이 해당 분야, 기술, 지역과 관련하여 사업이 이행되는 국가의 정책 또는 프로그램과 부합하는지 여부 | | |
| 2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가 법적의무사항인지 여부 | | |
| 3 | 오염 제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외) |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 | | |
| | | 수질오염(BOD, COD, pH 등)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 | | |
| | | 전자폐기물, 냉매 등 폐기물 발생 여부 | | |
| | | 소음 및 진동 수준 증가 여부 | | |
| | | 지반침하 유발 여부 | | |
| 4 | 안전 보건 | 지역사회와 사업참여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지 여부 | | |
| 5 | 환경 및 생물다양성 | 사업 지역이 국내법, 국제 조약 및 국제 협약에 의해 지정된 보호구역인지 여부 | | |
| | | 지역사회의 토지이용과 국내법, 국제 조약, 국제 협약에 의해 지정된 멸종위기종의 보호 지역 여부 | | |
| | | 외래종 유입 여부 | | |
| | | 자연 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음, 진동, 수질, 미세먼지, 배기가스, 폐기물 등) | | |
| | | 지표수, 지하수, 심층 지하수 사용 여부 | | |
| 6 | 경제 | 현지 노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 |
| | | 지역사회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 | |
| 7 | 사회 환경 및 지역사회 참여 | 사업의 지역사회 갈등 유발 여부 | | |
| | | 지역 공동체 의견과 불만사항에 대한 대응 및 후속조치 포함 여부 | | |
| | | 지역사회의 노동 및 근로조건 관련 법률 위반 여부 | | |
| 8 | 기술 | 기술 이전, 교육, 지원에 대한 프로젝트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인력의 역량배양 활동 포함 여부 | | |
| | | 설명서, 매뉴얼, 현장 대응 방안 등과 같은 기술 정보 제공 여부 및 운영상 문제점 해소방안 제공 여부(영어 및 현지어) | | |
| | | 건설, 시공 등 사업 준비단계에서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 활용 계획 여부 | | |

6.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 현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방식, 절차, 내용 및 이해관계자 제시 의견 요약 기술
- 문제점과 조치사항에 대해 기술(해당되는 경우)

7. 환경영향

- 대상국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관련 내용 제시

8. 참고 자료

- 사업계획서 작성에 활용된 문헌 기술

9. 사업자 정보

| | |
|---------|--|
| 사업자명 | |
| 사업장 주소 | |
| 전화 | |
| 팩스 | |
| 홈페이지 | |
| 실무담당자 | |
| 부서/직위 | |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 이메일 | |

- 사업자 세부사항(조직명, 담당자,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표 형태로 작성 제시

10.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 및 근거

| | | | | |
|--------------------|------|----|----|---|
| 10.1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 | 자가평가 | 우수 | 득점 | 4 |
|--------------------|------|----|----|---|

| 구분 | 국제개발협력(ODA) 중점협력국 | 신남방정책 | 신북방정책 | 기타 |
|------|-------------------|-------|-------|-------------|
| 해당여부 | (여/부) | (여/부) | (여/부) | (여/부) |
| | - | - | - | (정책 또는 전략명) |

| | | | | |
|----------------------|------|-----------|----|----|
| 10.2 사업대상국 의향서 확보 여부 | 자가평가 | 참여의향, 인허가 | 득점 | 15 |
|----------------------|------|-----------|----|----|

| 년월일 | 발신처 | 발신자 | 파리협정 제6조 | 인허가 사항 |
|------------|-----------|---------|----------|------------|
| 0000-00-00 | 000부 000국 | (이름/직책) | (여/부) | 000내 토지사용권 |

* [스캔본 첨부] 사업대상국의 파리협정 국가감축목표/제6조 관련 주무부처가 발행한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지지 등 확인 문서

| | | | | |
|--------------------------------|------|----|----|---|
| 10.3 사업대상국 온실가스 국제감축 양자협력 추진사례 | 자가평가 | 있음 | 득점 | 5 |
|--------------------------------|------|----|----|---|

| 순번 | 국가명 | 사업형태 | 주요사업 및 추진사업수(건) | 비고 |
|----|--------|------------------|-----------------|----|
| 00 | 000000 | (6.2 / 6.4 / 기타) | 000000사업 등 0건 | |
| 00 | 000000 | (6.2 / 6.4 / 기타) | 000000사업 등 0건 | |

* [근거서류 첨부]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사업 양자협력 사례 (스위스, 스웨덴, 일본 등)

| | | | | |
|---|------|----|----|---|
| 10.4 ITMO 활용 가능성-사업대상국 NDC 국제탄소시장 활용 언급여부 | 자가평가 | 활용 | 득점 | 5 |
|---|------|----|----|---|

| 발표년도 | 목표년도 | 달성목표 | | 제6조 활용 언급여부 | 비고 |
|------|------|------------|-------------|-------------|----|
| | | 조건부 | 무조건 | | |
| 0000 | 0000 | 0000대비 00% | 0000대비 000톤 | (여/부) | |

* [근거서류 첨부] NDC 해당부분 및 언론보도 등

| | | | | |
|-------------|------|--------|----|---|
| 10.5 사업추진단계 | 자가평가 | 사업권 확보 | 득점 | 8 |
|-------------|------|--------|----|---|

| 년월일 | 구분 | 세부내용 | 정부 부서(중앙/지방) | 종료년월일 |
|------------|--------------|--------|----------------|------------|
| 0000-00-00 | 인허가 | 000000 | (중앙) 000부 000국 | 0000-00-00 |
| 0000-00-00 | 사업권 | 000000 | (중앙) 000부 000국 | 0000-00-00 |
| 0000-00-00 |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 | 000000 | (중앙) 000부 000국 | 0000-00-00 |
| 0000-00-00 | 구속력 없는 협약 체결 | 000000 | (중앙) 000부 000국 | 0000-00-00 |
| 0000-00-00 | 사업제안 요청 | 000000 | (중앙) 000부 000국 | 0000-00-00 |

* [스캔본 첨부] 사업대상국의 파리협정 국가감축목표/제6조 관련 주무부처가 발행한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지지 등 확인 문서

| | | | | |
|-----------------------|------|--------|----|---|
| 10.6 투자구조 및 자본조달의 적정성 | 자가평가 | 투자 협약서 | 득점 | 3 |
|-----------------------|------|--------|----|---|

| 년월일 | 구분 | 사업방식 | 투자자 | 투자자별 투자액 |
|------------|-------|---------------|--------------|------------|
| 0000-00-00 | 투자협약서 | (PPP, 발주, 기타) | 000,0000,000 | 0000-00-00 |

* [스캔본 첨부] 투자자 및 체계 확인이 가능한 도표, 체결된 금융 약정서, 계약서, 투자확약서, 의향서, 기타 등

| | | | | |
|----------------------------------|-------------|----------|-----------|---|
| 10.7 주요 매출 및 비용 사용계획의 적정성 | 자가평가 | 조건 협의 | 득점 | 4 |
|----------------------------------|-------------|----------|-----------|---|

| 년월일 | 주요 매출 및 비용 항목 | 추진현황 | 금액 (백만원) | 비고 |
|------------|---------------|-----------|----------|----|
| 0000-00-00 | 0000기 구입 | 조건 협의 | 000000 | |
| 0000-00-00 | 00000시설 설치 | 계약 당사자 파악 | | |

* [스캔본 첨부] 단가조사서, 견적서, 계약서 등

| | | | | |
|-----------------------|-------------|-----------|-----------|---|
| 10.8 적용기술의 적정성 | 자가평가 | 가능성 검토 | 득점 | 2 |
|-----------------------|-------------|-----------|-----------|---|

| 순번 | 기술명 | 추진 단계 | 기술 소유자 | 비고 |
|-----|--------|-----------|--------|----|
| 000 | 000000 | 특허 사용권 확보 | 000000 | |
| 000 | 000000 | 특허 사용권 확보 | 000000 | |

* [스캔본 첨부] 계약서 등

| | | | | |
|---------------------------|-------------|-----|-----------|---|
| 10.9 기존 유사 감축사업 사례 | 자가평가 | 00건 | 득점 | 4 |
|---------------------------|-------------|-----|-----------|---|

| 순번 | 국가명 | 사업형태 | 주요사업 및 추진사업수(건) | 총 추진사업 수(건) |
|----|--------|-----------------|--------------------|-------------|
| 00 | 000000 | (CDM / JI / 기타) | 000000사업 등 0건 | 000 |
| 00 | 000000 | (CDM / JI / 기타) | 000000사업 등 0건 | |
| 00 | 000000 | (CDM / JI / 기타) | 000000사업 등 0건 | |

* [근거서류 첨부] CDM, JI 등 기존 유사 감축사업 현황

| | | | | |
|--------------------------|-------------|---|-----------|----|
| 10.10 우선협력 후보국 여부 | 자가평가 | A | 득점 | +2 |
|--------------------------|-------------|---|-----------|----|

| | | |
|-------------------------------------|--------------|---|
| 10.11 정부지원사업 신청 및 수행현황(최근5년) | 건수(건) | 8 |
|-------------------------------------|--------------|---|

| 순번 | 국가명 | 사업명 | 지원기관 | 추진현황 | | |
|----|--------|---------|--------|------------|------------|--------------|
| | | | | 시작년월일 | 종료년월일 | 사업비 (백만원) |
| 00 | 000000 | 00000사업 | 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 |
| 00 | 000000 | 00000사업 | 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0 |
| 00 | 000000 | 00000사업 | 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0 |

* [스캔본 첨부] 계약서, 수행실적 증명 등

| | | |
|-------------------------------|--------------|---|
| 10.12 해외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 건수(건) | 2 |
|-------------------------------|--------------|---|

| 순번 | 국가명 | 사업명 | 지원기관 | 추진현황 | | |
|----|--------|---------|--------|------------|------------|--------------|
| | | | | 시작년월일 | 종료년월일 | 사업비 (백만원) |
| 00 | 000000 | 00000사업 | 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 |
| 00 | 000000 | 00000사업 | 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0 |
| 00 | 000000 | 00000사업 | 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0 |

<덧붙임2> 사업비 사용계획서

1. 총괄표

(단위 : 천원, %)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 |
|-------|-------|--------|-----------------|----|
| | | 신청기업 | | 합계 |
| | | (현금) | | |
| | | (현물) | | |
| 100% | % | (현금) % | 민간 부담금 기준 | % |
| | | (현물) % | | |

※ 신청기업이 복수인 경우, 표의 칸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

2. 세부 사용계획

(단위 : 천원)

| 비목 | 세목 | 세부내역 | 산출근거 | 금액 |
|-------|-------------|------|------|----|
| 인건비 | 인건비 | 소계 | | |
| | | | | |
| | | | | |
| 직접비 | 장비 및 재료비 | 소계 | | |
| | | 계 | | |
| | | | | |
| | 사업활동비 | 계 | | |
| | | | | |
| | | | | |
| 위탁사업비 | 컨설팅비용 | 소계 | | |
| | | 계 | | |
| | 위탁사업비 | 계 | | |
| | | | | |
| 합 계 | | | | |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 ([별지 제20호 서식] 및 견적서 등)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 입증 필요

※ 양식 및 내용 일부 수정 가능

<덧붙임3> 경제성 분석 및 자원조달 계획

1. 재정지표

| 재정지표 | | 출처 | |
|------------|------------------------------|----|--|
| 비용 | | | |
| 설비투자비 | 설비구입비 (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 | |
| | 설치공사비 (설계비) | | |
| | 감리비 | | |
| | 시운전비 | | |
| | 기타 | | |
| 소계 | | | |
| 수익 | | | |
| 감축사업 수익 | 발전 등 | | |
| | 기타 | | |
| 소계 | | | |
| 기타 | | | |
| 설비수명 | | | |
| 감가상각 | | | |
| 운영비용 | | | |
| 소득세 | | | |

2. 민감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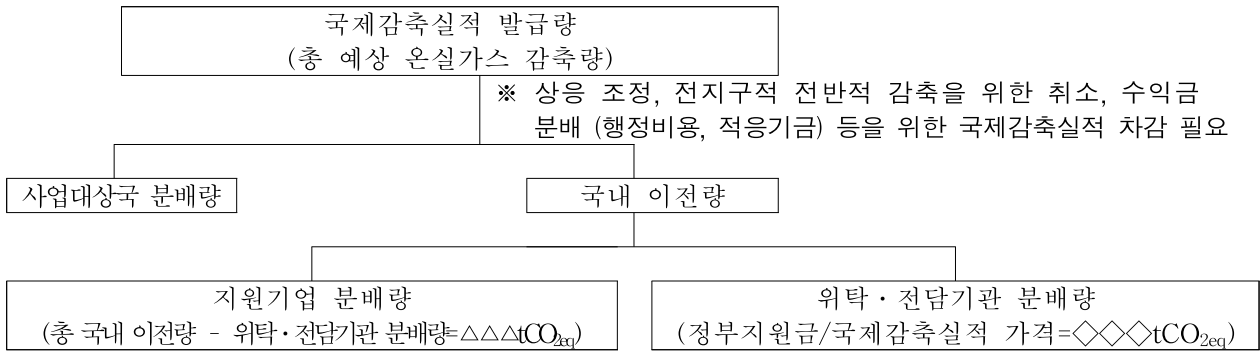
| 인자 | +10% 변동 | 변동 없음 | -10% 변동 | 벤치마크 |
|------|---------|-------|---------|------|
| 투자비 | | | | |
| 총수익 | | | | |
| 운영비용 | | | | |

3. 톤당 감축비용 산정

4. 자금조달 계획

※ 경제성분석 양식(안)의 경우 신청 기업의 경제성분석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3. 국제감축실적 분배량 산정



※ 상응조정,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위한 취소, 수익금분배(행정비용, 적응기금) 등의 경우 양자협력 및 사업 초기시점 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정부지원금, 국제감축실적 가격 활용 분배량 계산

가. 국제감축실적 발급량(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 tCO_{2eq}

- 위탁·전담기관 분배량 :

(고정형) ◇◇◇◇tCO_{2eq} (정부지원금/(국제감축실적 가격) = ◇◇◇◇ tCO_{2eq})

(변동형) ◆◆◆◆tCO_{2eq} (대표금리 할증된 정부지원금/국제감축실적 가격 = ◆◆◆◆tCO_{2eq})

- 지원기업 분배량 : △△△tCO_{2eq} (총 국내 이전량 - 위탁·전담기관 분배량=△△△tCO_{2eq})

※ 협약 체결 시 국제감축실적 발급량(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으로 작성하며, 모니터링 이후 정부지원금, 대표금리 할증된 정부지원금, 국제감축실적 가격 기준으로 재산정

나. 국제감축실적 톤당 감축비용

- 총 사업비 대비 톤당 감축비용(총사업비/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원/tCO_{2eq}

- 투자비 대비 톤당 감축비용(투자비/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원/tCO_{2eq}

- 전력판매, 폐기물 처리비 등 배출권 외 수익 제외 총 사업비 대비 톤당 감축비용((총사업비-배출권외 수익)/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원/tCO_{2eq}

※ 국제감축사업을 통한 수익 발생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톤당 감축비용 산정

4. 국제감축사업 유형

가. 사업 유형 :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확보 사업 / 국제감축실적 확보 사업(택 1)

- 전체 사업 수익 대비 국제감축실적 수익 : □□% (▽▽▽원)

- 전체 사업 수익 대비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 ■■■% (▼▼▼원)

* '20~'22년 3년간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배출권(KAU) 거래물량 평균 가격 적용(24,546원)

5. 국제감축실적 연간 분배량 및 사업 수익 산정

가. 국제감축실적 분배 기간 : 20 . . . ~ 20 . . . (■ 년간)*

* '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위탁·전담기관 분배량의 경우 최대 '31년까지 제출

나. 국제감축실적 분배량 및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산정

| 분배 연도 | 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 ₂ eq) | 예상 국내 이전량 (tCO ₂ eq) | 정부 지원금 상환액 (백만원) | 국제감축 실적 가격 (원) | 위탁·전담 기관 예상 분배량 (tCO ₂ eq) | 보상 필요량* (tCO ₂ eq) | 국제감축 실적 외 사업 수익 (백만원) | 최대 보상량** (tCO ₂ eq) |
|-------|--|--|---------------------------|----------------------|---|-------------------------------------|--------------------------------|--------------------------------------|
| Year1 | | | | | | - | | - |
| Year2 | | | | | | - | | - |
| Year3 | | | | | | - | | - |
| Year4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보상 필요량은 위탁·전담기관 분배 계획 대비 5% 이상 감소시 산정하며, 국제감축실적 외 사업 수익의 최대 50% 범위 내 산정하고 국제감축실적으로 제출(모니터링 이후 실제 발급되는 감축실적 기준 산정)

※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국제감축 실적 분배량이 적은 경우 보상하지 않음

** 최대 보상량은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의 최대 50%범위 내에서 보상필요량과 국제감축실적 가격(고정형/변동형)으로 결정하며, 최대 보상량보다 보상 필요량이 적을 경우 해당 보상량으로 산정

※ 협약 체결 시 국제감축실적 발급량 기준(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작성하며, 모니터링 이후 정부지원금, 대표금리 할증된 정부지원금, 국제감축실적 가격 기준으로 재산정

<덧붙임5>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출여부를 ○,×로 표시)

| 순번 | 구분 | 주관 기업 | 참여 기업1 | 참여 기업2 | 참여 기업3 |
|----|---|----------|-----------|-----------|-----------|
| 1 | 사업자등록증 | | | | |
| 2 | 법인등기부등본 | | | | |
| 3 | 법인인감증명서 | | | | |
| 4 | 국세 납입증명서 | | | | |
| 5 | 지방세 납입증명서 | | | | |
| 6 |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전년도 | | | |
| 7 | | 전전년도 | | | |
| 8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 |
| 9 | 국제감축사업 주요 설비 주요구성 및 사양서 | | | | |
| 10 |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경제성 분석 산정근거 데이터 | | | | |
| 11 | 사업비 사용계획 내역 근거자료 | | | | |
| 12 | 경제성분석 산출내역 근거자료 | | | | |
| 13 | 본 사업 관련 사업대상국의 파리협정 국가감축목표/제6조 관련 주무부처가 발행한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지지 등 확인 문서 | | | | |
| 14 | 정부지원사업 신청 및 수행현황(최근 5년) 증빙자료 | | | | |
| 15 | 해외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관련 증빙자료 | | | | |
| 16 | (해당사업 소재지기준) 환경법적 기준 준수 증빙서류 | | | | |
| 17 | 신청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 | | | |
| 18 |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별지 제19호 서식) | | | | |
| 1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 | | |
| 20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 | |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별첨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에 페이지 기재 필요
2.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각 제출서류 **해당 기업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3.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 또는 직인만** 유효
 ※ 각종 제출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을 직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직인을 한 면에 **동시 날인한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4.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출서류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

[별지 제4호의2 서식]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 | | | | |
|---|--------------------------------------|--------------------|---|---|-------------------------------|
| | | | 접수번호 | | |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신청서 | | | | | |
| 기본정보 (신청기업)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 표 자 명 | | 법인등록 번호 | | |
| | 기 업 구 분 | |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
| | 사무소 | 주 소 | (우편번호 :) | | |
| | | 전 화 | FAX | | |
| | 수행 책임자 | 담당자명 | 부서/직책 | | |
| e-mail | | 연 락 처 | | | |
| 컨소시엄 | 기업명 | 기업구분 | 소재지 | 업 종 | |
| | 수행(주관) (참여1) | | | | |
| | (참여2) | | | | |
| 신청정보 | 사 업 명 | | | | |
| | 대상국(국명, 지역) | | | | |
| | 신청구분 | | <input type="checkbox"/>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지원 <input type="checkbox"/> 본 타당성조사(본타) 지원* | | |
| | (예타 지원) 공단과 본타당성조사, 설치 지원사업 연계 추진 동의 | | <input type="checkbox"/> 동의 | | |
| | (본타 지원) 공단과 설치 지원사업 연계 추진 동의 | |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 |
| | 타당성조사(FS) 총 신청사업비 | 백만원 | 정부지원금 | 백만원 (%) | |
| | | | 민간부담금 | (계) | 백만원 (%) |
| | | | | (현금) | 백만원 (%) |
| (현물) | | | | 백만원 (%) | |
| 타당성조사 기간 | | yyyymm ~ yyyymm | | | |
| 사업정보 | 예상 사업기간 | yyyymm ~ yyyymm | 재원조달방식 | 민관협력(PPP)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 | 예상 초기투자비 | 백만원 | | 유상/무상ODA <input type="checkbox"/> 대상국(발주처) <input type="checkbox"/> | |
| | 연간 예상 운영비 | 백만원 | | | |
| |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tCO _{2eq} | | | |
| <p>1. 위와 같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신청합니다.</p> <p>2. 당사는 타당성조사 지원과 관련하여 동일 과업에 대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본 사업이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동일 과업에 대해 지원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겠습니다.</p> <p>3.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선정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기업 : 수행(주관) (대표이사 명) (직인) (참여1) (대표이사 명) (직인) (참여2) (대표이사 명)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p> | | | | | |

* 본타 지원사업은 예타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예타보고서 등 제출 필요

** 연계 추진 미동의시 사업선정 및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

| | |
|------|--|
| 신청기업 | |
|------|--|

20 .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 요약

| | | | | |
|---------|-----------------------|---------|-----------------------------|-----------------------------|
| 사 업 명 | | 분 야 | | |
| | | 신 청 구 분 | 예타 <input type="checkbox"/> | 본타 <input type="checkbox"/> |
| 신 청 기 업 | | | | |
| 타당성조사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개월) | | | |

| 구 | 분 | 타당성조사(FS) 총 신청 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
|---|---|-----------------------|-------|----------|-----|
| | | | | 신청기업 | 합 계 |
| 금 | 액 | 백만원 | 백만원 | (현금) 백만원 | 백만원 |
| | | | | (현물) 백만원 | |
| 비 | 율 | 100% | % | (현금) % | % |
| | | | | (현물) % | |

| | | | | |
|-------|-------------------|--------------------|----------------------|-----|
| 사업정보* | 예상 사업비 | 백만원 | 연간 예상 운영비 | 백만원 |
| |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tCO _{2eq} | 감축량 산정 방법론(CDM 등) | |

* 동일/유사 사업 유형 및 사업 규모 기준 산정

1. 사업 개요
 -
2. 추진 경과
 -
3. 사업대상국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사업 추진 가능성 분석
 -
4. 신청기업 개요 및 타당성조사 계획
 -
5. 경제성 분석
 -
6.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결과
 -
7. 지속가능발전 기여
 -

(사업계획 요약서는 1page 이내로 작성)

※ 양식 및 내용 일부 수정 가능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목적 및 적용기술에 대한 설명

- 사업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적용 기술, 온실가스 배출원을 설명
- 사업목적은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기술
- 사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방법 등을 기술

1.2 사업 위치

| | |
|----------------|--|
| 국가, 지역 | |
| 주소 | |
| 지역적 위치(위도, 경도) | |

- 사업 위치는 해당 사업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를 명확히 기술(지도 포함)

1.3 사업참여자

| 구 분 | 사업자 명 |
|---------|-------|
| 사업참여자 1 | |
| 사업참여자 2 | |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예상 사업참여자 기술

1.4 사업 추진 일정

| 업무구분 | 20 년 | | 20 년 | | | | 20 년 | | |
|---------------|------|-----|------|-----|-----|-----|------|-----|-----|
|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 |
| 1. 예비/본 타당성조사 | | | | | | | | | |
| 2. 설치 등 착공 | | | | | | | | | |
| 3. 시설 운영 | | | | | | | | | |
| 4. . . . | | | | | | | | | |

- 업무구분, 추진 일정의 경우 각 사업별 특성 및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작성

2. 추진경과

2.1 사업 개발 단계 및 경과

- 해당 사업 현재 추진 단계 및 연도별 추진 경과 기술

2.2 사업대상국 중앙/지역 정부와 논의 경과

- 해당 사업관련 지역정부/중앙 환경부 등 관련 부처 현황 및 협의 진행 사항

3. 사업대상국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사업 추진 가능성 분석

3.1 사업 대상국가 분석

- 사업대상 국가(지역)의 정치/사회적, 경제적, 자연 환경 관련 사항
- 사업대상 국가의 환경정책, 온실가스 감축정책, 파리협정 하 국가감축목표 등 관련 사항 기술

3.2 양자협력사업 추진 가능성 분석 및 계획

- 대상국의 파리협정 양자협력 등 탄소시장 활용 가능성 등 기술
- 파리협정 하 감축사업추진 가능성 (OECD 국가등급, ODA 중점협력국, 국내기업 사업 추진 여부 등)
- 중앙/지방정부와 협력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계획

4. 신청기업 개요

4.1 신청기업 개요

- 조직도 및 주요사업분야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실적
- 신청기업의 신용도

5. (예비/본) 타당성조사 수행계획

5.1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향후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운영계획

- 국제감축사업 수행 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 등의 역할
- 타당성조사시 투입인력 운영 계획(현지 출장 계획 등)
-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등 경력사항

가. 타당성조사 수행 조직

| 구분 | 기관명 | 주요 업무 |
|--------|-----|-------|
| 주관기업 | | . |
| 참여기업 1 | | . |
| 참여기업 2 | | . |

나. 타당성조사 수행인력

- 수행인력 : 총 00명(실제 참여자 기준)
 - 주관기관 : 00명 / 참여기업 1 : 00명 / 참여기업 2 : 00명

| 구분 | 성명 | 직급 | 참여율 | 주요 업무 |
|--------|----|----|-----|-------|
| 주관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기업 1 | | | | . |
| | | | | . |
| 참여기업 2 | | | | . |
| | | | | . |

-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유사사업 수행 경험, 대상국 경험, 주요 경력 및 학위

5.2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분석(본 타당성조사의 경우)

- 예비 타당성조사 시 기초사된 항목, 주요 결과, 분석결과 및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항
- 예비 타당성조사 세부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첨부

5.3 (예비/본) 타당성조사 수행 일정

| 구분 | 수행내용 | 세부내용 | 수행일정(월) | | | | | | | | | | | | 수행기관 및 전략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 추진일정 등 수행계획 개요

5.4 타당성조사 수행 계획

- 타당성조사항목(기술적/재무적/경제적/법률적/온실가스 감축 등)
- 항목별 세부 조사계획 및 방법
- 위험요소 분석 및 향후 국제감축사업으로의 추진 계획
- 위탁용역 활용계획(외주용역업체 개요, 수행계획 등)
- 소요예산 산출근거(상세내역 엑셀 파일 첨부)

6. 경제성 분석

6.1 예상 사업비

- 감축설비 설계 및 설치를 위한 투자비

6.2 연간 예상 운영비

- 행정비,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6.3 경제성 분석 결과

- 사업비, 운영비, 연간 수익(국제감축실적, 발전 수익 등) 고려 경제성 분석 결과 제시
- 사업 투자 구조

※ 자료 불충분으로 경제성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사업 및 규모의 경제성분석 토대 제시 필요

6.4 소요자금 조달 계획

- 사업비, 운영비 등 소요자금 조달 계획

7.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결과

7.1 방법론

- CDM 등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시 활용 방법론

7.2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배출량, 누출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자료 불충분으로 감축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사업 및 규모의 감축량 토대 추정값 제시 필요

8. 지속가능발전 기여

■ 해당 사업이 대상국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여부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 번호 | 항목 | 확인 사항 | 해당여부 (○/×) | 설명 |
|----|------------------------------|---|---------------|----|
| 1 | 정책일관성 | 사업이 해당 분야, 기술, 지역과 관련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국가의 정책 또는 프로그램과 부합하는지 여부 | | |
| 2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가 법적의무사항인지 여부 | | |
| 3 | 오염 제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외) |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 | | |
| | | 수질오염(BOD, COD, pH 등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 | | |
| | | 전자폐기물, 냉매 등 폐기물 발생 여부 | | |
| | | 소음 및 진동 수준 증가 여부 | | |
| | | 지반침하 유발 여부 | | |
| 4 | 안전 보건 | 지역사회와 사업참여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지 여부 | | |
| 5 | 환경 및 생물다양성 | 사업 지역이 국내법, 국제 조약 및 국제 협약에 의해 지정된 보호구역인지 여부 | | |
| | | 지역사회의 토지이용과 국내법, 국제 조약, 국제 협약에 의해 지정된 멸종위기종의 보호 지역 여부 | | |
| | | 외래종 유입 여부 | | |
| | | 자연 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음, 진동, 수질, 미세먼지, 배기가스, 폐기물 등) | | |
| | | 지표수, 지하수, 심층 지하수 사용 여부 | | |
| 6 | 경제 | 현지 노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 |
| | | 지역사회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 | |
| 7 | 사회 환경 및 지역사회 참여 | 사업의 지역사회 갈등 유발 여부 | | |
| | | 지역 공동체 의견과 불만사항에 대한 대응 및 후속조치 포함 여부 | | |
| | | 지역사회의 노동 및 근로조건 관련 법률 위반 여부 | | |
| 8 | 기술 | 기술 이전, 교육, 지원에 대한 프로젝트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인력의 역량배양 활동 포함 여부 | | |
| | | 설명서, 매뉴얼, 현장 대응 방안 등과 같은 기술 정보 제공 여부 및 운영상 문제점 해소방안 제공 여부(영어 및 현지어) | | |
| | | 건설, 시공 등 사업 준비단계에서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 활용 계획 여부 | | |

9. 사업자 정보

| | |
|---------|--|
| 사업자명 | |
| 사업장 주소 | |
| 전화 | |
| 팩스 | |
| 홈페이지 | |
| 실무담당자 | |
| 부서/직위 | |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 이메일 | |

■ 사업자 세부사항(조직명, 담당자,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표 형태로 작성 제시

10.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 및 근거

| | | | | |
|----------------------|------|-------|----|---|
| 10.1 해외사업 수행실적(최근5년) | 자가평가 | 4건 이상 | 득점 | 5 |
|----------------------|------|-------|----|---|

| 순번 | 국가명 | 사업명 | 지원기관 | 추진현황 | | |
|----|--------|---------|--------|------------|------------|--------------|
| | | | | 시작년월일 | 종료년월일 | 사업비 (백만원) |
| 00 | 000000 | 00000사업 | 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 |
| 00 | 000000 | 00000사업 | 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0 |
| 00 | 000000 | 00000사업 | 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0 |

* [스캔본 첨부] 계약서, 수행실적 증명 등

| | | | | |
|---------------------------------|------|-------|----|---|
| 10.2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실적(최근5년) | 자가평가 | 4건 이상 | 득점 | 5 |
|---------------------------------|------|-------|----|---|

| 순번 | 국가명 | 사업명 | 구분 | 지원기관 | 추진현황 | | |
|----|--------|---------|---------|--------|------------|------------|--------------|
| | | | | | 시작년월일 | 종료년월일 | 사업비 (백만원) |
| 00 | 000000 | 00000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 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 |
| 00 | 000000 | 00000사업 | 본타당성조사 | 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0 |
| 00 | 000000 | 00000사업 | 실시설계 | 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0 |

* [스캔본 첨부] 계약서, 수행실적 증명 등

| | | | | |
|--|------|-------|----|---|
| 10.3 수행책임자의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실적(최근5년) | 자가평가 | 4건 이상 | 득점 | 5 |
|--|------|-------|----|---|

| 순번 | 국가명 | 사업명 | 구분 | 지원기관 | 추진현황 | | |
|----|--------|---------|---------|--------|------------|------------|--------------|
| | | | | | 시작년월일 | 종료년월일 | 사업비 (백만원) |
| 00 | 000000 | 00000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 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 |
| 00 | 000000 | 00000사업 | 본타당성조사 | 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0 |
| 00 | 000000 | 00000사업 | 실시설계 | 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0 |

* [스캔본 첨부] 계약서, 수행실적 증명 등

| | | | | |
|------------------|------|---|----|---|
| 10.4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자가평가 | B | 득점 | 8 |
|------------------|------|---|----|---|

| 구분 | 기업명 | 평가등급 | 평가구분 | 평가기관 | 유효기간 (년월일)까지 | 사업비 배분액 (백만원) | 배분비율 (%) |
|-----|--------|------|--------|------|-----------------|---------------------|-------------|
| 주관 | 000000 | BB- | 회사채 | 0000 | 0000-00-00 | 00000 | 00.0 |
| 참여1 | 000000 | A- | 기업신용평가 | 0000 | 0000-00-00 | 00000 | 00.0 |
| 참여2 | 000000 | BBB | 기업신용평가 | 0000 | 0000-00-00 | 00000 | 00.0 |

* [스캔본 첨부] 평가서 등

10.5 사업대상국 의향서 확보 여부

| 년월일 | 발신처 | 발신자 | 파리협정 제6조 | 인허가 사항 |
|------------|-----------|---------|----------|------------|
| 0000-00-00 | 000부 000국 | (이름/직책) | (여/부) | 000내 토지사용권 |

* [스캔본 첨부] 사업대상국의 파리협정 국가감축목표/제6조 관련 주무부처가 발행한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지지 등 확인 문서

10.6 사업대상국 온실가스 국제감축 양자협력 추진사례

| 순번 | 국가명 | 사업형태 | 주요사업 및 추진사업수(건) | 비고 |
|----|--------|------------------|-----------------|----|
| 00 | 000000 | (6.2 / 6.4 / 기타) | 000000사업 등 0건 | |
| 00 | 000000 | (6.2 / 6.4 / 기타) | 000000사업 등 0건 | |

* [근거서류 첨부]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사업 양자협력 사례 (스위스, 스웨덴, 일본 등)

10.7 ITMO 활용 가능성-사업대상국 NDC 국제탄소시장 활용 언급여부

| 발표년도 | 목표년도 | 달성목표 | | 파리협정 제6조 활용 언급여부 | 비고 |
|------|------|---------------|----------------|------------------|----|
| | | 조건부 | 무조건 | | |
| 0000 | 0000 | 0000대비 00% | 0000대비 000톤 | (여/부) | |

* [근거서류 첨부] NDC 해당부분 및 언론보도 등

<덧붙임2> 사업비 사용계획서

1.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 타당성조사(FS) 총 신청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 |
|----------------------|-------|-------|----------|-----|
| | | 신청기업 | | 합계 |
| 백만원 | 백만원 | (현금) | 백만원 | 백만원 |
| | | (현물) | 백만원 | |
| 100% | % | (현금) | % | % |
| | | (현물) | % | |
| | | | 민간부담금 기준 | |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등 복수인 경우, 표의 칸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

2. 세부 사용계획

(단위 : 천원)

| 비목 | 세목 | 세부내역 | 산출근거 | 금액 | |
|-----|---------------------------------|------|------|----|--|
| 인건비 | 수행책임자 인건비 | 계 | | | |
| | 참여인력 인건비 | 소계 | | | |
| | | | | | |
| 경비 | | 소계 | | | |
| | 여비 | 계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유인물비, 자문료, 통·번역비 임차료 등 | 계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위탁 용역사업비 | 계 | | | |
| | | | | | |
| 합계 | | | | | |

* 사업 제안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 ([별지 제20호 서식] 및 견적서 등)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 입증 필요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등 복수인 경우, 표의 칸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

※ 양식 및 내용 일부 수정 가능

<덧붙임3>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출여부를 ○,×로 표시)

| 순번 | 구분 | 주관 기업 | 참여 기업1 | 참여 기업2 | 참여 기업3 |
|----|---|----------|-----------|-----------|-----------|
| 1 | 사업자등록증 | | | | |
| 2 | 법인등기부등본 | | | | |
| 3 | 법인인감증명서 | | | | |
| 4 | 국세 납입증명서 | | | | |
| 5 | 지방세 납입증명서 | | | | |
| 6 |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전년도 | | | |
| 7 | | 전전년도 | | | |
| 8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 |
| 9 | 타당성조사 참여인력 명단 | | | | |
| 10 | 참여인력별 사업 관련 주요경력 및 자격 증빙자료 | | | | |
| 11 |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경제성 분석 산정근거 데이터 | | | | |
| 12 | 사업비 사용계획에 대한 근거자료 (인건비, 위탁용역비, 경비 등 포함) | | | | |
| 13 | 경제성분석 산출내역 근거자료 | | | | |
| 14 | 본 사업 관련 사업대상국의 파리협정 국가감축목표/제6조 관련 주무부처가 발행한 양자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 지지 등 확인 문서 | | | | |
| 15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실적 (최근 5년) 증빙자료 | | | | |
| 16 | 해외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증빙자료 | | | | |
| 17 | 수행책임자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증빙자료 | | | | |
| 18 | (해당사업 소재지기준) 환경법적 기준 준수 증빙서류 | | | | |
| 19 | 신청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본타 지원시) | | | | |
| 20 |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별지 제19호 서식) | | | | |
| 2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 | | |
| 22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 | |

◆ 제안서 작성 및 별첨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에 페이지 기재 필요
2.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각 제출서류 해당 기업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3.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 또는 직인만 유효
 ※ 각종 제출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을 직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직인을 한 면에 동시 날인한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4.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출서류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

[별지 제5호의1 서식] 국제감축사업 평가표 (설치 지원사업)

국제감축 설치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1. 사업개요

| | | | | |
|-------|---------------------------------|--------------|-------|--|
| 사업명 | | | | |
| 대상국명 | | | 신청기업 | |
| 총사업기간 | 20 . 0. 0. ~ 20 . . (개월) | 사업비 (백만원) | 합계 | |
| | | | 정부지원금 | |
| | | | 민간부담금 | |

2.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 【 점 】

3. 평가사항(100점)

| 평가항목 |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점수 |
|---------------------------|----------------------|----------|----|----|----|----------|----|
| 사업의 적정성 (35) | 정책 및 전략과 연계성 (5) | 1 | 2 | 3 | 4 | 5 | |
| | 지속가능발전기여 (5) | 1 | 2 | 3 | 4 | 5 | |
| | 사업대상국 확인서 (15) | 1 | 5 | 9 | 12 | 15 | |
| | 양자협력 사업 사례 (5) | 1 | 2 | 3 | 4 | 5 | |
| | ITMO활용 가능성 (5) | 1 | 3 | 3 | 4 | 5 | |
| 사업화 가능성 (30) | 사업추진단계 (10) | 2 | 4 | 6 | 8 | 10 | |
| | 투자구조 및 자본조달의 적정성 (5) | 1 | 2 | 3 | 4 | 5 | |
| | 수입 안정성 및 비용의 적정성 (5) | 1 | 2 | 3 | 4 | 5 | |
| | 적용기술의 적정성 (5) | 1 | 2 | 3 | 4 | 5 | |
| | 기존 감축사업 사례 (5) | 1 | 2 | 3 | 4 | 5 | |
| 감축실적 확보 적정성 (15) | 방법론 적용의 적정성 (5) | 1 | 2 | 3 | 4 | 5 | |
| |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5) | 1 | 2 | 3 | 4 | 5 | |
| | 모니터링 계획의 적정성 (5) | 1 | 2 | 3 | 4 | 5 | |
| 사업의 경제성 (20) | 총 감축량 규모 (10) | 2 | 4 | 6 | 8 | 10 | |
| | 국제감축실적 톤당 감축비용(10) | 2 | 4 | 6 | 8 | 10 | |
| 가점(2) | 우선협력 후보국(2) | 1 | | 2 | | | |
| 합계 | | 100(+2) | | | | | |

4. 사업비에 대한 의견

| 구 분 | | 당해연도 사업비 | 검토의견 | 조정내역 및 금액 | |
|---------------|----------------|----------|---|---|---|
| 사업비에 대한 의견 | 1. “항목” | 백만원 |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조정 필요 | | |
| | 2. “항목” | 백만원 |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조정 필요 | | |
| | 3. “항목” | 백만원 |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조정 필요 | | |
| | 4. “항목” | 백만원 |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조정 필요 | | |
| | 5. “항목” | 백만원 |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조정 필요 | | |
| | 6. “항목” | 백만원 |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조정 필요 | | |
| | 총 계 | | | 평가자 제시 적정 사업비 | |
| 정부지원금 요청비용 | | | 정부 적정 지원금 | | |
| 종합 의견 | 총 사업비에 대한 종합의견 | | <input type="checkbox"/> 적정 (5% 미만) | <input type="checkbox"/> 다소과다 (5%~20%) | <input type="checkbox"/> 과다 (20% 초과) |

5. 종합의견

| |
|--|
| <p>1. 본 사업의 긍정적인 면</p> <p>2. 본 사업의 부정적인 면(환경영향, 리스크 등)</p> <p>3. 기타 종합의견</p> |
|--|

심의위원 : _____ (인)

[별지 제5호의2 서식] 국제감축사업 선정평가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1. 사업개요

| | | | | |
|---------------|-----------------------------------|--------------|----------------------------------|--------------------|
| 사업명 | | | | |
| 신청 구분 | 예비 타당성조사 <input type="checkbox"/> | | 본 타당성조사 <input type="checkbox"/> | |
| 대상국명 | | | 합계 | 백만원 |
| 신청기업 | 수행(주관) | 타당성조사 사업비 | 정부지원금 | 백만원 |
| | 참여1 | | 민간부담금 | 백만원 |
| | 참여2 | | | |
| 총 타당성조사 기간 | 20 . 0. 0. ~ 20 . . . (개월) | | 사업정보 | |
| | | | 예산 사업비 | 백만원 |
| | | | 연간 예산 운영비 | 백만원 |
| | | | 연간 예산 온실가스 감축량 | tCO _{2eq} |

2.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 【 점 】

3. 평가사항(100점)

| 평가항목 |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점수 | |
|-----------|-------------------------|----------------------------|----|----|----|----------|----|--|
| 정량 평가 | 신청 기업 적정성 (40) | 해외 사업 수행 실적 (10) | 2 | 4 | 6 | 8 | 10 | |
| |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실적(15) | 3 | 6 | 9 | 12 | 15 | |
| | | 수행책임자의 경험 (5) | 1 | 2 | 3 | 4 | 5 | |
|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 | 2 | 4 | 6 | 8 | 10 | |
| 정성 평가 | 사업화 가능성 (40) | 사업의 적정성 (15) | 3 | 6 | 9 | 12 | 15 | |
| | | 사업 추진 가능성 (10) | 2 | 4 | 6 | 8 | 10 | |
| | | 타당성조사 계획 (10) | 2 | 4 | 6 | 8 | 10 | |
| | | 사업 경제성 분석 (5) | 1 | 2 | 3 | 4 | 5 | |
| | 기대 효과 (20) | 온실가스 감축효과 (10) | 2 | 4 | 6 | 8 | 10 | |
| | | 지속가능발전기여 (10) | 2 | 4 | 6 | 8 | 10 | |
| 합계 | | 100 | | | | | | |

4. 종합의견

1. 본 사업의 긍정적인 면

2. 본 사업의 부정적인 면(환경영향, 리스크 등)

3. 기타 종합의견

심의위원 : _____ (인)

[별지 제6호의1 서식] 업무협약서 (설치 지원사업)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지원 및 국제감축실적 분배를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과 *(이하 “지원기업”, 공단 및 지원기업을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은 “국제감축사업명”에 대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지원 및 국제감축실적 분배를 위한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국제감축사업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당사자들이 추진·지원하고 국제감축실적을 분배하기 위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별첨1”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3조(대상사업) 당사자들이 협력하는 감축사업은 “별첨2”와 같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2. 대상지역 : 국가명, 지역명
3. 총 사업비 :
4.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실적: XX 톤CO₂-eq

제4조(협약의 범위와 기간) ① 협약의 범위는 본 사업을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하여 국제감축실적을 발급 받고 분배하는 것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제7조에서 규정한 공단이 감축 실적을 모두 분배 받는 시점까지로 한다.

③ 지원기업은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공단에 협약 내용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변경승인 사항을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제5조(정부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 ① 공단은 본 사업을 지원·관리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정부지원금을 지원기업에게 지급한다.
- ② 공단은 공단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지원기업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지원기업이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단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지원기업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관리·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본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한 감축설비를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또는 정부지원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⑤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을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기업(또는 지원기업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별도의 사업비 전용 계정(계좌)이나 통장으로 사업비를 청구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기업 및 참여기업별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 ⑥ 지원기업은 동일 계정 또는 통장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⑦ 지원기업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 시설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지원기업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본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 단,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⑨ 공단이 1항에 따라 지원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부지원금은 “별첨2”에서 정하기로 한다.

⑩ 지원기업은 민간부담금의 경우에도 정부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지원금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 또는 공단의 요청일 이후 20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사용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정부지원금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원기업에게 소명·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정산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정부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사업 외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산 금액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⑥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부당집행액으로 발생한 정산금액 중 정부지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정산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감축실적의 발급 및 분배) ① 국제감축실적의 발급 및 분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간 협력사항에 대한 합의가 구체화 된 이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본 사업의 인증유효기간 내 감축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3자에 의해 검증받은 후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③ 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국제감축실적을 공단에 분배

하여야 하며, 공단이 분배 받아야 하는 국제감축실적 총량은 정부지원금 대비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④ 3항에 따라 공단이 분배 받아야 하는 국제감축실적은 “별첨3”에서 정하기로 한다.

⑤ 향후 정부지원금이 변동될 경우, 공단이 분배 받아야 하는 국제감축실적은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불가항력)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상의 역할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해진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한 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협약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태풍, 홍수, 화재, 홍수, 지진 등)
2. 해당 국가 정부의 내란, 쿠데타, 전쟁, 폭동, 상대국의 관련 법령 제·개정, 공단의 사업취소 또는 계획 변경 등 외부적 요인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본 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3. 파리협정 및 양 국가 간의 양자협력 정책 등, 인허가 절차 변경으로 인한 감축실적 발급 불가
4. 기타 제8조 각호에 준하는 사유

제9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① 공단은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 할 수 있다.

1.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부지원금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기업이 환경부장관 또는 공단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9조제1항의 협약 중지 또는 해약과 별도로,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고의, 과실로 본 협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하여 손해의 책임을 진다.

③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 후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기각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상대국의 관련법령 제·개정, 공단의 사업취소 또는 계획변경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협약 이행의 보증) ① 지원기업은 시설의 설치기간 중 “협약의 목적”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보증서를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에 따른 선금보증의 형태로 공단에 납부한다.

② 지원기업은 시설의 설치 이후 “협약의 목적”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서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또는 지원기업이 정부지원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은 제1항의 보증금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보험금으로부터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진도관리) ① 공단은 지원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 현황, 추진 성과, 사업비 관리실태, 중간산출물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해 지원기업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업은 이에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③ 공단은 사업의 진도관리를 위해 중간점검을 추진할 수 있으며, 중간점검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보고회, 기술자문회의 또는 현장점검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중간점검 결과 사업 추진 현황이 미진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진도관리 결과 사업수행 중단이 결정된 지원기업에 대하여 제9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며,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또는 공단의 요청 이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 수행의 내용 및 결과
3.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발전기여 효과 등)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사업성과의 파급효과
6. 분배된 또는 분배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7. 기타 공단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기업은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게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지원기업이 사업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지체할 경우 제12조의 “실패”로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결과의 평가 및 조치) ① 공단은 사업의 결과 평가를 위해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공”으로 판정된 사업은 종료하고 제6조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및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등은 회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에 따라 “실패”로 판정된 사업은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지원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합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점수 및 개별의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권리 양도)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서면 승인 없이는 이 협약을 통해 발생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통지) ①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행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및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포기
2. 기타 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당사자들은 사업 수행 등에 관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 상대방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개선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 기간 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부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제8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참여제한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사업평가결과 “실패”로 판정된 경우
3. 제17조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배임·횡령, 부정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사업기간 중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포함)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선정 및 수행·보고한 경우
6.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포기한 경우
7.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는 집행잔액으로 제한
8. 기타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 환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환수금을 납부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악화의 사유로 일시납부가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 또는 반납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환수대상기관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원기업이 유예기간 중 환수금 납부가 가능해진 경우에는 즉시 환수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지원기업에게 정산결과 등에 따른 환수금 납부 독촉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후 종결하고,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 또는 징수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비밀의 유지) 당사자들은 사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협약의 해석 등) 본 협약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들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이의 신청) ① 지원기업은 제6조에 따른 정산결과, 제11조에 따른 점검결과,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 제16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대하여, 해당 결과 및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이의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분쟁해결) ① 본 협약에 따른 당사자들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용어 정의

1. “국제감축사업”이란 환경부장관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말한다.
2. “국제감축실적”이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실적으로서, 지원기업이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취득한 것을 말한다.
3. “파리협정”이란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협정이며,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말한다.
4. “양자협력”이란 파리협정 제6.2조에 근간한 파리협정 하 당사국간의 자발적 참여 기반의 상향식 접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식을 말한다.
5. “정부지원금”이란 지원기업이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6. “민간부담금”이란 사업비 중 지원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현물과 현금의 합계를 말한다.
7. “모니터링”이란 지원기업이 국제감축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8. “인증유효기간”이란 국제감축실적 발급이 가능한 기간으로 지원기업이 사업의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9. “검증”이란 지원기업이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가 양자협력 체계 구축에 따른 절차 및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발급”이란 지원기업이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파리협정 및 양자협력 체계 구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받아 국제감축실적이 발급되는 것을 말한다.

[업무협약서 별첨 2.] 사업 개요

사업 개요

1. 사업명 :
2. 사업국가 :
3. 사업내용 :
4. 지원기업(사업추진주체) :
5. 협약기간 :
6. **년 국제감축사업 지원기간 :
7. 국제감축사업 전체 설치 및 운영기간 :
8. 사업규모 및 추진일정

가. 사업규모

-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실적 : XX 톤CO₂-eq.
- 총 사업비 : XX 백만원

| 항 목 | 사 용 용 도 | 금액 (백만원) |
|----------------|---|-------------|
| 감축설비 투자비 | 설비 구입비, 공사비(설계비), 감리비, 시운전비 | |
| 운영비 | 협약기간 동안의 감축사업 컨설팅비, 행정비용,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 |
| 기타 비용 |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시설철거비, 관련 인허가 비용, 부가가치세 등 | |
| 사업비용 합계 | | |

나. 정부지원금(위탁·전담기관) : XX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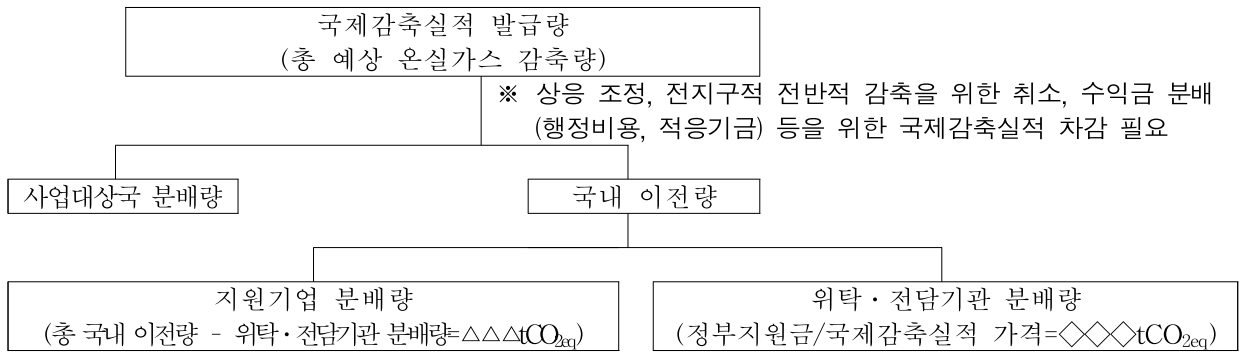
-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XX%
- 선금 70% XXX중 지급, 잔금 30% XXX 중 지급

다. 민간부담금(지원기업) : XX 백만원

라. 추진일정(예상 소요기간)

- 각종 인허가 취득일 : YYYY.DD.MM까지
- 감축설비 설치 개시일 : YYYY.DD.MM까지

3. 국제감축실적 분배량 산정



※ 상응조정,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위한 취소, 수익금분배(행정비용, 적응기금) 등의 경우 양자 협력 및 사업 초기시점 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정부지원금, 국제감축실적 가격 활용 분배량 계산

가. 국제감축실적 발급량(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 tCO_{2eq}

- 위탁·전담기관 분배량 :
 (고정형) ◇◇◇tCO_{2eq} (정부지원금/(국제감축실적 가격) = ◇◇◇ tCO_{2eq})
 (변동형) ◆◆◆tCO_{2eq} (대표금리 할증된 정부지원금/국제감축실적 가격 = ◆◆◆tCO_{2eq})
- 지원기업 분배량 : △△△tCO_{2eq} (총 국내 이전량 - 위탁·전담기관 분배량=△△△tCO_{2eq})

※ 협약 체결 시 국제감축실적 발급량(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으로 작성하며, 모니터링 이후 정부지원금, 대표금리 할증된 정부지원금, 국제감축실적 가격 기준으로 재산정

나. 국제감축실적 톤당 감축비용

- 총 사업비 대비 톤당 감축비용(총사업비/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원/tCO_{2eq}
 - 투자비 대비 톤당 감축비용(투자비/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원/tCO_{2eq}
 - 전력판매, 폐기물 처리비 등 배출권 외 수익 제외 총 사업비 대비 톤당 감축비용((총사업비-배출권외 수익)/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원/tCO_{2eq}
- ※ 국제감축사업을 통한 수익 발생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톤당 감축비용 산정

4. 국제감축사업 유형

가. 사업 유형 :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확보 사업 / 국제감축실적 확보 사업(택 1)

- 전체 사업 수익 대비 국제감축실적 수익 : □□% (▽▽▽원)
- 전체 사업 수익 대비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 ■■■% (▼▼▼원)

* '20~'22년 3년간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배출권(KAU) 거래물량 평균 가격 적용(24,546원)

5. 국제감축실적 연간 분배량 및 사업 수익 산정

가. 국제감축실적 분배 기간 : 20 . . . ~ 20 . . . (□ 년간)*

* '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위탁·전담기관 분배량의 경우 최대 '31년까지 제출

나. 국제감축실적 분배량 및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 산정

| 분배연도 | 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 ₂ eq) | 예상 국내 이전량 (tCO ₂ eq) | 정부 지원금 상환액 (백만원) | 국제감축 실적 가격 (원) | 위탁·전담 기관 예상 분배량 (tCO ₂ eq) | 보상 필요량* (tCO ₂ eq) | 국제감축 실적 외 사업 수익 (백만원) | 최대 보상량** (tCO ₂ eq) |
|-------|-------------------------------------|---------------------------------|------------------|----------------|---------------------------------------|-------------------------------|-----------------------|--------------------------------|
| Year1 | | | | | | - | | - |
| Year2 | | | | | | - | | - |
| Year3 | | | | | | - | | - |
| Year4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보상 필요량은 위탁·전담기관 분배 계획 대비 5% 이상 감소시 산정하며, 국제감축실적 외 사업 수익의 최대 50% 범위 내 산정하고 국제감축실적으로 제출(모니터링 이후 실제 발급되는 감축실적 기준 산정)

※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국제감축 실적 분배량이 적은 경우 보상하지 않되, 연도별 정부지원금을 재산정 (단,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상하여야 함)

** 최대 보상량은 국제감축실적 외 수익의 최대 50%범위 내에서 보상필요량과 국제감축실적 가격(고정형/변동형)으로 결정하며, 최대 보상량보다 보상 필요량이 적을 경우 해당 보상량으로 산정

※ 협약 체결 시 국제감축실적 발급량 기준(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작성하며, 모니터링 이후 정부지원금, 대표금리 할증된 정부지원금, 국제감축실적 가격 기준으로 재산정

[별지 제6호의2 서식] 업무협약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과 *(이하 “지원기업”, 공단 및 지원기업을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은 “지원사업명”에 대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지원사업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당사자들이 추진·지원하기 위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3조(대상사업) 당사자들이 협력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별첨1”과 같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2. 대상지역 : 국가명, 지역명
3. 타당성조사 총 신청 사업비 : 백만원
4. 타당성조사 총 신청 사업비에 대한 정부지원금 : 백만원(%)

제4조(협약의 범위와 기간) ① 협약의 범위는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추진·지원하는 것까지로 한다.

②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제7조에서 규정한 지원기업이 타당성조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그 이후에 대한 협력은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한 바에 따른다.

③ 지원기업은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공단에 협약 내용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변경승인 사항을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5조(정부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 ① 공단은 본 사업을 지원·관리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정부지원금을 지원기업에게 지급한다. 단,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기업은 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의 경우에도 정부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기업은 제1항의 민간부담금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한다.

③ 공단은 공단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원기업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지원기업이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단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지원기업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관리·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 세목기준 20% 이내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본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3. 정부지원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을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기업(또는 지원기업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별도의 사업비 전용 계정(계좌)이나 통장으로 사업비를 청구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원기업 및 참여기업별 1사업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⑦ 지원기업은 동일 계정 또는 통장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지원기업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 시설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지원기업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본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 사용하여 하며,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 단,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정부지원금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 또는 공단의 요청일 이후 20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사용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정부지원금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원기업에게 소명·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14일 이내에 소명·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정산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정부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사업 외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산 금액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⑥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부당집행액으로 발생한 정산금액 중 정부지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정산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의 활용 및 관리) 공단은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 타당성조사보고서를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업이 보고서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비공개를 요청하여 인정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국제감축사업 연계 추진) ① 지원기업은 제13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공”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환경부장관이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 타당성조사 지원 또는 설치 지원사업으로 우선 연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 타당성조사/설치 지원사업으로 연계 추진 시 사업 선정 및 최종 확정에 관한 사항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공단은 해당연도 지원사업이 완료 후 지원사업의 개발 추진 상황, 설치 지원사업으로의 연계 추진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은 해당연도 지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효과 제고 및 설치 지원사업으로의 연계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불가항력)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상의 역할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해진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한 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천재지변(태풍, 홍수, 화재, 홍수, 지진 등)
2. 해당 국가 정부의 내란, 쿠데타, 전쟁, 폭동, 상대국의 관련 법령 제·개정, 공단의 사업취소 또는 계획 변경 등 외부적 요인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본 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3. 파리협정 및 양 국가 간의 양자협력 정책 등, 인허가 절차 변경으로 인한 국제감축사업으로의 연계 추진 불가
4. 기타 제9조 각호에 준하는 사유

제10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① 공단은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 할 수 있다.

1.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부지원금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기업이 환경부장관 또는 공단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협약기간 중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공단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0조제1항의 협약 중지 또는 해약과 별도로,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고의, 과실로 본 협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하여 손해의 책임을 진다.

③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 후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기각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상대국의 관련법령 제·개정, 공단의 사업취소 또는 계획변경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협약 이행의 보증) 지원기업은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보증서를 공단에 납부한다.

제12조(사업의 진도관리) ① 공단은 지원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 현황, 추진 성과, 사업비 관리실태, 중간산출물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해 지원기업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업은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③ 공단은 사업의 진도관리를 위해 중간점검을 추진할 수 있으며, 중간점검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보고회, 기술자문회의 또는 현장점검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중간점검 결과 사업 추진 현황이 미진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진도관리 결과 사업수행 중단이 결정된 지원기업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며,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또는 공단의 요청 이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타당성조사 내용 및 결과
3. 본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온실가스 감축량, 지속가능발전기여 등)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본 사업 추진 가능성
6. 사업대상국 관련 부처(중앙 또는 지방정부 등)의 양자협력 및 국제감축사업 추진 의향 확인 또는 협의 결과
7. 기타 공단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기업은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게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지원기업이 사업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지체할 경우 제12조의 “실패”로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결과의 평가 및 조치) ① 공단은 사업의 결과 평가를 위해 제 13조에 따라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공” 및 “평가불가”로 판정된 사업은 종료하고 제6조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및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등은 회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에 따라 “실패”로 판정된 사업은 지원기업으로 하여금 최종보고서의 미비 내용에 대한 설명, 수정·보완 또는 추가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공단의 보완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원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지원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합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점수 및 개별의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권리 양도)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서면 승인 없이는 이 협약을 통해 발생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통지) ①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행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및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포기
2. 기타 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당사자들은 사업 수행 등에 관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 상대방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개선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 기간 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재조치) ① 공단은 제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참여제한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사업평가결과 “실패”로 판정되어 공단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부지원사업 수행 시 배임·횡령, 부정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사업기간 중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포함)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선정 및 수행·보고한 경우
6.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포기한 경우
7.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는 집행잔액으로 제한
8. 기타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 환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환수금을 납부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악화의 사유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 또는

반납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환수대상기관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원기업이 유예기간 중 환수금 납부가 가능해진 경우에는 즉시 환수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지원기업에게 정산결과 등에 따른 환수금 납부 독촉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후 종결하고,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 또는 징수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비밀의 유지) 당사자들은 사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협약의 해석 등) 본 협약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들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이의 신청) ① 지원기업은 제6조에 따른 정산결과, 제12조에 따른 점검결과,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 제16조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 해당 결과 및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이의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협약에 따른 당사자들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를 우선하며,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③ 본 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제22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 당사자들이 적법하게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은 당사자가 협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③ 본 협약서의 “별첨”은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X 년 XX 월 XX 일



한국환경공단

이 사 장

(주소)

**

대 표 이 사

(주소)

[업무협약서 별첨 1.] 사업 개요

사업 개요

1. 사업명 :
2. 사업국가 :
3. 사업내용 :
4. 지원기업(사업추진주체) :
5. 협약기간 :
6. 타당성조사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가. 지원규모

- 타당성조사 총 신청 사업비 : XXX 백만원

| 항 목 | 사 용 용 도 | 금액 (백만원) |
|-----------------|--|-------------|
| 인건비 | 수행책임자 인건비, 타당성조사 참여인력 인건비 | |
| 경비 | 협약기간 동안의 국내·외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자문료, 세미나 참가비, 번역료, 통역비 등),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 | |
| 총 신청 사업비 | | |

※ 본 사업 예비/본 타당성조사 관련 비용만 산정 가능

나. 정부지원금 : XXX 백만원(협약 후 일시/분할 지급)

- 타당성 조사 총 신청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XX%

다. 민간부담금 :

라. 추진일정(예상 소요기간)

- 타당성조사 주요 항목(1) : YYYY.DD.MM까지
- 타당성조사 주요 항목(2) : YYYY.DD.MM까지
- 그 외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 완료일 기재

국제감축사업 연계 추진 의향서

본인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지원금 교부 목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하고 관리지침 제33조에 의거 추후 본 사업을 환경부장관이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본타당성조사지원/설치지원)”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으로 연계 참여·신청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본인은 본 사업이 환경부장관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추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을 인지한다.
2. 본인은 추후 동 사업을 환경부 장관이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본타당성조사지원/설치지원)”으로 추진하며, 정부지원금 교부 후, 동 사업을 환경부장관이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으로 참여·신청을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제감축사업으로의 최종 선정은 심의위원회의 사업 선정 평가에 따름을 인지한다.

년 월 일

지원기업명 :

지원기업 대표이사 :

수행책임자 :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민간부담금 부담 협약서

1. 사업명 :
2. 지원기업 :
3. 협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민간부담금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동 사업에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위 : 천원)

| 민간부담금 총계(A+B) | | | |
|-----------------------|--|--------------|-------------------|
| 현금 부담금액 및 일자 | 금액(현금)(A=C+D) | 선금(70%이상)(C) | 잔금(30%이하)(D) |
| | 부담일자 | 협약 체결 전 입금 | 중간점검 이후 30일 이내 |
| 현물 부담 금액 | 금액(현물)(B) ※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와 기타 위탁·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

20 년 월 일

지원기업 :

직인

지원기업 :

직인

수행책임자 :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서 약 서

본인은 국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사업목적 외에 정부지원금을 임의 집행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유용 또는 총 사업비 사용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중대한 협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기일 내에 미제출한 경우
3. 위탁·전담기관이 요청한 보완 또는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은 경우
4. 위탁·전담기관이 지원기업의 불성실로 국제감축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년 월 일

지원기업명 :

지원기업 대표이사 : (인 또는 서명)

수행책임자 : (인 또는 서명)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8호의1 서식]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설치 지원사업)

설치 지원사업 정부지원금(선금, 잔금) 지급신청서

1. 사업명 :

2. 신청자(지원기업)

- 주소 :
- 업체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3. 설치장소(지원기업)

- 국가명(설치대상국가) :
- 주소(설치장소) :
- 업체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4. 사업개요

- 사업명 :
- 협약기간 : 20 . . . (협약체결일) ~ 20 . . .
- 사업내용 :

5. 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
| 금 액(부담율, %) | | | |

6. 정부지원금 교부신청액 및 기 교부내역

(단위 : 원)

| 합 | 정부지원금 총액 | 기 교부액 | 당회 교부 요청액 | 교부잔액 |
|---|----------|-------|-----------|------|
| 계 | | | | |

7. 정부지원금 지급처

- 예금주명 :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 붙임 1. 입금계좌 통장사본, 국제감축사업 전용 사업비 관리계좌 확인서(별지 제8호의3 서식)
 2. 계약보증보험, 선금보증보험 증권
 3. 사업자등록증
 4. 지원기업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5. 선금사용 계획서
 6. 하도급 계획서 또는 기 지급된 사용액이 있을 경우, 계약서 및 지급증빙

20 . . .

(지원기업 대표자)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덧붙임> 선금사용 계획서

(단위:백만원)

| 비 목 | | 구 분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 (A) | 선금 금액 (B) | 기 지급 금액 (C) | 정부지원금 잔액 (A-B-C) | |
|-----|-----------|-----------|-------|----------------------|-----------------|-------------------|------------------------|--|
| 사업비 | 1. 공사비 | | | | | | | |
| | 토목, 건축공사 | | | | | | | |
| | | 토목 | | | | | | |
| | | 부지 정지 | | | | | | |
| | | 복토 | | | | | | |
| | | 건축 | | | | | | |
| | 기계분야 | | | | | | | |
| | | 발전기 | | | | | | |
| | | 전처리설비 | | | | | | |
| | | 배관 및 설치공사 | | | | | | |
| | | | | | | | | |
| | 전기계측 제어분야 | | | | | | | |
| | | 수배전반 | | | | | | |
| | | 송전선로 | | | | | | |
| | | 계측설비 | | | | | | |
| | 2. 설계비 | | | | | | | |
| | 3. 감리비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5. 예비비 | | | | | | | |
| | 소계 | | | | | | | |
| | 총 계 | | | | | | | |

[별지 제8호의2 서식]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1. 사업명 :

2. 지원기업(수행(주관) 및 참여기업)

| 기업명 | 업체명(대표자)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수행(주관) | | | |
| 참여1 | | | |
| 참여2 | | | |

3. 사업개요

- 사업명 :
- 협약기간 : 20 . . . (협약체결일) ~ 20 . . .
- 사업내용 :

4. 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

| 구분 | 타당성조사(FS)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
| 금액(부담율, %) | 원(%) | 원(%) | 원(%) |

5. 정부지원금 교부신청액

(단위 : 원)

| 구분 | 타당성조사(FS)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교부 요청액 | |
|----|--------------------|-------|--------|--|
| | | | 수행(주관) | |
| | | | 참여1 | |
| | | | 참여2 | |

6. 정부지원금 지급처

(단위 : 원)

| 기업명 | 예금주명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
| 수행(주관) | | | |
| 참여1 | | | |
| 참여2 | | | |

- 붙임 1. 입금계좌 통장사본, 국제감축사업 전용 사업비 관리계좌 확인서(별지 제8호의3 서식)
 2.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3. 사업자등록증
 4. 지원기업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20 . . .

(수행(주관)기업 대표자) (인)
 (참여기업 대표자)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용 사업비 관리계좌 확인서

1. 사업명 : (시행국가, 당초 사업신청서에 작성한 사업명 기술)
2. 지원유형 : (예비 타당성조사/본 타당성조사/설치지원)
3. 지원기업 : (권소사업의 경우 모든 참여기관 기술)
4. 사업비 : 총 원 (정부지원금 : 원)
 (민간부담금 : 원)
 * 현금 원, 현물 원

한국환경공단과 지원기업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의 관리 및 사용을 위한 지원기업 명의의 전용 계좌를 아래와 같이 개설하며, 사업비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및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사업비 전용 관리계좌

| 기관명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주관기관 | 은행 지점 | | |
| 참여기관 | 은행 지점 | | |
| 참여기관 | 은행 지점 | | |

20 년 월 일

지원기업 대표 : (인)
 지원기업 대표 : (인)
 지원기업 대표 : (인)
 지원기업 수행책임자 : (인)

첨 부 : 사업비 수령계좌 통장사본(각 사별) 1식.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9호의1 서식] 최종보고서 양식 (설치 지원사업)

온실가스 국제감축 설치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 | |
|------|--|
| 신청기업 | |
|------|--|

20 . .

사업성과 요약

| | | | |
|--------|------------------------|----|--|
| 사업명 | | 분야 | |
| 신청기업 | | | |
| 지원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개월) | | |
| 협약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개월) | | |
| 인증유효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개월) | | |

| 구분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
|---------|------|-------|-------|----------|
| | | | 신청기업 | 합계 |
| 금액 (천원) | | | (현금) | |
| | | | (현물) | |
| 비율 (%) | 100 | | (현금) | 민간부담금 기준 |
| | | | (현물) | |

| 구분 | 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tCO _{2eq.} /yr) | 위탁·전담기관 분배량 (tCO _{2eq.}) | 지원기업 분배량 (tCO _{2eq.}) | 국제감축실적 톤당 감축비용* (원/tCO _{2eq.}) |
|----|---|------------------------------------|---------------------------------|--|
| 내용 | | | | |

* 총사업비(투자비+운영비) 대비 총 감축량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 사업 수행의 내용 및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3.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발전기여 효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5. 사업성과의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6. 분배된 또는 분배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p>(본 '사업성과 요약' 포함 10쪽 이내로 최종보고서 요약본 작성)</p> |
|---|

[별지 제9호의2 서식] 최종보고서 양식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온실가스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 | |
|------|--|
| 신청기업 | |
|------|--|

20 . .

사업성과 요약

| | | | | | |
|---------|--------------------|---|---|-----------------------------|-----------------------------|
| 사업명 | | 분 | 야 | | |
| | | 구 | 분 | 예타 <input type="checkbox"/> | 본타 <input type="checkbox"/> |
| 신청기업 | | | | | |
| 타당성조사기간 | 20년 월 ~ 20년 월 (개월) | | | | |

| 구 | 분 | 타당성조사(FS) 총 신청 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
|---|---|-----------------------|-------|----------|-----|
| | | | | 신청기업 | 합계 |
| 금 | 액 | 백만원 | 백만원 | (현금) 백만원 | 백만원 |
| | | | | (현물) 백만원 | |
| 비 | 율 | 100% | % | (현금) % | % |
| | | | | (현물) % | |

| | | | | |
|------|-------------------|--------------------|-----------|-----|
| 사업성과 | 예상 사업비 | 백만원 | 연간 예상 운영비 | 백만원 |
| |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tCO _{2eq} | 사업기간 | 년 |

1. 사업 개요
 -
 2. 사업 수행의 내용 및 결과
 -
 -
 3.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발전기여 효과 등)
 -
 -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
 -
 5. 본 사업 추진 가능성
 -
 -
 6. 사업대상국 관련 부처(중앙 또는 지방정부 등)의 양자협력 사업 추진 의향 확인 및 협의결과
 -
 -
 7. 분배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
- (본 '사업성과 요약' 포함 10쪽 이내로 최종보고서 요약본 작성)

1. 사업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 항목 | 세목 | 구분 | 당초계획 | 변경예산 | 사용금액 | 증감 | 증감사유 |
|------------------|------------------------------|--|------|------|------|----|------|
| 정부 지원금 | 감축설비 투자비 (위탁사업비 포함) | 설비 구입비 (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등 기자재 포함) | | | | | |
| | | 공사비 (설계비) | | | | | |
| | | 감리비 | | | | | |
| | | 시운전비 | | | | | |
| | | 부가가치세 등 | | | | | |
| 정부/ 민간 부담금 | 운영비 (위탁사업비 포함) | 감축사업 건설팅 | | | | | |
| | | 행정비용 | | | | | |
| | | 운영인력 인건비 | | | | | |
| | | 유지관리비 | | | | | |
| | 기타 비용 (위탁사업비 포함) | 토지구입비 | | | | | |
| | | 건물공사비 | | | | | |
| | | 시설철거비 (폐기물 처리 비용 등 포함) | | | | | |
| | | 관련 인허가 비용 | | | | | |
| | | 부가가치세 등 | | | | | |
| | 소계 | | | | | | |
| 총사업비 | | | | | | | |

※ 토지구입비, 시설철거비 등의 목적으로 정부지원금 사용 불가

2. 비목별 집행내역서

가. 정부지원금

(1) 감축설비 투자비

(단위:원)

| 번호 | 집행일 | 지급처 | 사용금액 | 사용목적 | 사용구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집행건수 건 |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 |

나. 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 (1) 운영비 ※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
- (2) 기타 비용 ※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

3.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 | | | |
|--|--|------------------------|---|
| 사업명 | | | |
| 지원기업/ 수행책임자 | | | |
| 협약기간 | 20 ~ 20 (년 월) | | |
| 사업비 | 총계 원 (정부 : 원, 민간 : 원) | | |
| 이자 산출기간 | 20 ~ 20 | | |
| 사용잔액 | 원 | 사용 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A) | 원 |
| 협약기간 중 발생이자(B) | 원 | 협약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C) | 원 |
| 총 이자액(B+C) | 원 | 발생이자 사용금액(D) | 원 |
| 발생이자 사용내역 | | | |
| 미사용이자(B+C-D) | 원 | 미사용이자 중 정부지원금 지분(E) | 원 |
| 총 반납액(A+E) | 원 | | |
|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 내역 | - 반납계좌번호 : (계좌번호(“-” 포함), 은행명) - 반 납 일 : (형식 “yyyy-mm-dd”) - 반 납 액 : 원 | | |
| ※ 입금증 사본, 이자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및 발생이자 사용내역 증빙자료 제출 (총)정부지원금 | | | |
| ※ 정부지원금 지분 계산방법 _____ (총)정부지원금 + (총)민간부담분 작 성 자 : (인) | | | |

4. (자체) 회계의견서

(1) 사업개요

| | | | | |
|-------|--|------|-----------------------|--|
| 사업명 | | | | |
| 수행책임자 | | 협약기간 | 20 . . ~ 20 . . (년 월) | |

(2) 사업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 정부지원금 | 원 | 사용금액 | 사용잔액 | 정부지분 | 이체일과 근거번호 |
|----------|---|------|------|------|--------------|
| 민간부담금 | 원 | 원 | 원 | 원 | 이체금액 : |
| 당해연도 사업비 | 원 | | | | 이체일 : |
| | | | | | 근거번호 : |

나. 발생이자 반납액

| 구분 | 금액 | 정부지분 | 이체일과 근거번호 |
|-----------------------|----|------|--------------|
| 협약기간 중 발생이자 (미사용분) | 원 | 원 | 이체금액 : |
| 사용잔액중 발생이자 | 원 | 원 | 이체일 : |
| | | | 근거번호 : |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반납액

|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 정부지분 | 이체일과 근거번호 |
|-------------------------|------|--------------|
| 원 | 원 | 이체금액 : |
| | | 이체일 : |
| | | 근거번호 : |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 원)

| 비목 | 부적정 집행내역 | 부적정 집행금액 | 정부지분 | 비고 |
|--|-------------|-------------|------|----|
| 감축설비 투자비 · 설비 구입비 · 공사비 ... 운영비 · 운영인력 인건비 ... 기타 비용 · 토지구입비 ... 위탁사업비 | | | | |
| 합계 | | | | |

(4) 종합의견

위 국제감축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지원기업의 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1. 사업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 항목 | 세목 | 구분 | 당초계획 | 변경예산 | 사용금액 | 증감 | 증감사유 |
|-----------|------|----------------------|------|------|------|----|------|
| 정부 지원금 | 인건비 | 수행책임자 인건비 | | | | | |
| | | 타당성조사 참여인력 인건비 | | | | | |
| | 경비 | 국내여비 | | | | | |
| | |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민간 부담금 | 인건비 | 수행책임자 인건비 | | | | | |
| | | 타당성조사 참여인력 인건비 | | | | | |
| | | ... | | | | | |
| | 경비 | 국내여비 | | | | | |
| | |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총사업비 | | | | | | |
| | | | | | | | |

2. 비목별 집행내역서

가. 정부지원금

(1) 인건비

(단위: 원)

| 번호 | 집행일 | 지급처 | 사용금액 | 사용목적 | 사용구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집행건수 건 |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 |

나. 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 (1) 인건비 ※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
 (2) 경비(국내여비) ※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

3.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 | | | |
|--|--|------------------------|-----|
| 사업명 | | | |
| 지원기업/ 수행책임자 | | | |
| 협약기간 | 20 ~ 20 (년 월) | | |
| 사업비 | 총계 원 (정부 : 원, 민간 : 원) | | |
| 이자 산출기간 | 20 ~ 20 | | |
| 사용잔액 | 원 | 사용 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A) | 원 |
| 협약기간 중 발생이자(B) | 원 | 협약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C) | 원 |
| 총 이자액(B+C) | 원 | 발생이자 사용금액(D) | 원 |
| 발생이자 사용내역 | | | |
| 미사용이자(B+C-D) | 원 | 미사용이자 중 정부지원금 지분(E) | 원 |
| 총 반납액(A+E) | 원 | | |
|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 내역 | - 반납계좌번호 : (계좌번호(“-” 포함), 은행명) - 반 납 일 : (형식 “yyyy-mm-dd”) - 반 납 액 : 원 | | |
| ※ 입금증 사본, 이자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및 발생이자 사용내역 증빙자료 제출 (총)정부지원금 | | | |
| ※ 정부지원금 지분 계산방법 (총)정부지원금 + (총)민간부담분 | | | |
| 작성 자 : | | | (인) |

4. (자체) 회계의견서

(1) 사업개요

| | | | |
|-------|------|-----------------|-------|
| 사업명 | | | |
| 수행책임자 | 협약기간 | 20 . . ~ 20 . . | (년 월) |

(2) 사업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 정부지원금 | 원 | 사용금액 | 사용잔액 | 정부지분 | 이체일과 근거번호 |
|----------|---|------|------|------|--------------|
| 민간부담금 | 원 | 원 | 원 | 원 | 이체금액 : |
| 당해연도 사업비 | 원 | | | | 이체일 : |
| | | | | | 근거번호 : |

나. 발생이자 반납액

| 구 분 | 금 액 | 정부지분 | 이체일과 근거번호 |
|-----------------------|-----|------|-----------|
| 협약기간 중 발생이자 (미사용분) | 원 | 원 | 이체금액 : |
| 사용잔액 중 발생이자 | 원 | 원 | 이체일 : |
| | | | 근거번호 : |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반납액

|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 정부지분 | 이체일과 근거번호 |
|-------------------------|------|-----------|
| 원 | 원 | 이체금액 : |
| | | 이체일 : |
| | | 근거번호 : |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 원)

| 비 목 | 부적정 집행내역 | 부적정 집행금액 | 정부지분 | 비고 |
|---|-------------|-------------|------|----|
| 인건비 · 수행책임자 인건비 · 참여인력 인건비 ... | | | | |
| 경비 · 국내여비 ... | | | | |
| 위탁사업비 | | | | |
| 합 계 | | | | |

(4) 종합의견

위 국제감축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지원기업의 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의2 서식] 완료신고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완료 신고서

1. 지원업체명:
2. 국제감축사업명:
3. 대상국:
4. 총 사업비:
5. 정부지원금:
5. 설계·시공·컨설팅 업체:(필요시)
6. 착수연월일:
7. 조사 완료 연월일:

위와 같이 온실가스 국제감축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기업

(직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고서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 | | | | | |
|---|--------------------------|---------|------------------------------|-------------------------------|-------------------------------|
| 기본정보 (업체정보관리)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 표 자 명 | | 법인등록번호 | | |
| | 기 업 구 분 | |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
| | 업 종 | | | | |
| | 본사 | 주 소 | | | |
| | | 전 화 | | FAX | |
| | 설치지 | 대상국명 | | | |
| | | 주 소 | | | |
| | | 전 화 | | FAX | |
| | 담당자 | 담 당 자 명 | | 부서/직책 | |
| e-mail | | 연락처 | | | |
| 변경사항 | 선택 | 변 경 항 목 | | | |
| | | 설치지원 | 타당성조사지원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input type="checkbox"/> | 사업계획 변경 | 타당성조사계획(조사항목 등) 변경 | | |
| | <input type="checkbox"/> | 설치설비 내역 | 사업비 집행계획 | | |
| | <input type="checkbox"/> | 사업기간 | 사업기간 | | |
| | <input type="checkbox"/> | 사업비 변경 | 기타 변경사항 | | |
| <input type="checkbox"/> | 기타 변경사항 | | | | |
| 위와 같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20 지원업체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div> | | | | | |

1

변경사유

변경내용 상세

변경이유

변경이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 (설치 지원사업) 첨부서류

| 변경항목 | 첨부서류 | 비고 |
|----------------|--|------------------------|
| 사업계획 변경 | □ 사업계획 변경 관련 서류 | |
| 설치설비내역 |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도면, 팜플렛 등) | |
| 사업기간 변경 | □ 공사기간 및 인허가 기간 변경 □ 선하증권(선적확인증), 적하증권, 선적송장, 포장명세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제작요청서(공장발주서) □ 제작 지연 확인서류(거래 관련 공문, 이메일 등) | *업체별 진행상황에 맞는 서류 선택 |
|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 □ 사업비 집행관련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등 관련서류 | |
| 기타 변경사항 | □ 기타 증빙서류 | |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첨부서류

| 변경항목 | 첨부서류 | 비고 |
|----------------|--|------------------------|
| 타당성조사 계획 | □ 조사계획 변경 관련 서류 | |
| 사업기간 변경 | □ 조사기간 변경 □ 조사 지연 확인서류(거래 관련 공문, 이메일 등) | *업체별 진행상황에 맞는 서류 선택 |
|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 □ 사업비 집행관련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등 관련서류 | |
| 기타 변경사항 | □ 기타 증빙서류 | |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 포기각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포기각서

| | | | |
|--|--------------------------|-------|--|
| 사업명 | | | |
| 지원기업 | | 수행책임자 | |
| 협약기간 | 20 . . . ~ 20 . . . (개월) | | |
| 사업비 | 정부지원금 | | |
| | 민간부담금 | 현금 | |
| | | 현물 | |
| 합계 | | | |
| 참여기업 | | 대표자 | |
| <p>지원기업인 _____은(는) 상기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하여 ()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며, 이에 따른 제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지원기업 대표 : (직인)</p> <p style="text-align: right;">수행책임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p> | | | |

※ 지원기업이 사업 수행을 포기할 때 제출하는 문서임

[별지 제15호 서식] 실시상황 보고서

실시상황 보고서

(20 . . .)

1. 지원기업명 :

2. 설치 현황

| | |
|----------------|--|
| 국제감축사업 진행상황 | |
|----------------|--|

3. 사업 소요비용 사용 현황

| 비 목 | 사업 소요 비용 | | | |
|-----|----------|----------------|-----|-----|
|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지급결정액 | 실 적 | 잔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4. 특이사항

| | |
|--------------|--|
| 사업진행 특이사항 | |
|--------------|--|

첨부 1. 공정표

2. 국제감축사업 진행상황 사진/조사 보고서

20 년 월 일

지원기업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사고 보고서

사 고 보 고 서

| | | | | |
|---|-----|--|-----|--|
| 지원기업명 (사업장명) | | | | |
| 사 무 소 | 주 소 | | | |
| | 전 화 | | FAX | |
| 사고내용 및 경위 | | | | |
| 사후조치 및 경과 | | | | |
| 사고가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 | | | |
| 향후계획 및 담당자 의견 | | | | |
| <p>위와 같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수행 중의 업무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p> <p style="text-align: right;">보고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p> | | | | |

[별지 제17호의1 서식] 최종평가서 (설치 지원사업)

설치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1. 국제감측사업 개요

| | | | |
|------|--|-------|--|
| 사업명 | | | |
| 지원기업 | | 수행책임자 | |
| 사업비 | | 협약기간 | |

2.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 | | | | |
|------|---------|--|------|--|
| 평가위원 | 성명 | | | |
| | 소속 및 직위 | | 전화번호 | |

4. 평가내용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매우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우수 | 점수 |
|--------------|------------------------|------|----|----|----|------|----|
| 사업성과 (50) | 감측설비 설치·운영 적절성 (20) | 4 | 8 | 12 | 16 | 20 | |
| | 목표 달성 정도 (30) | 6 | 12 | 18 | 24 | 30 | |
| 노력도 (25) | 사업비 집행 적정성(15) | 3 | 6 | 9 | 12 | 15 | |
| | 추진방법 및 과정 적극성(10) | 2 | 4 | 6 | 8 | 10 | |
| 사후관리 (25) | 온실가스 감측실적 확보 계획(20) | 4 | 8 | 12 | 16 | 20 | |
| | 사업대상국 지속가능발전기여(5) | 1 | 2 | 3 | 4 | 5 | |
| 합계 | | 100 | | | | | |

20 . . .

심의위원 : _____ (인)

[별지 제17호의2 서식] 최종평가서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1. 지원사업 개요

| | | | |
|------|--|-------|--|
| 사업명 | | | |
| 지원기업 | | 수행책임자 | |
| 사업비 | | 협약기간 | |

2.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 | | | | |
|------|---------|--|------|--|
| 평가위원 | 성명 | | | |
| | 소속 및 직위 | | 전화번호 | |

4. 평가내용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매우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우수 | 점수 |
|---------------------|-------------------------|-----------|----|----|----|------|----|
| 사업의 적정성 (60) | 사업 기초조사(10) | 2 | 4 | 6 | 8 | 10 | |
| | 기술적 타당성(20) | 4 | 8 | 12 | 16 | 20 | |
| | 경제적 타당성(20) | 4 | 8 | 12 | 16 | 20 | |
| | 리스크 분석(10) | 2 | 4 | 6 | 8 | 10 | |
| 국제감축 사업 연계 가능성 (30) | 사업 추진의 준비성(15) | 3 | 6 | 9 | 12 | 15 | |
| | 사업비 집행 타당성(10) | 2 | 4 | 6 | 8 | 10 | |
| | 지속가능발전 기여(5) | 1 | 2 | 3 | 4 | 5 | |
| 사업의 경제성 (10) | 총 감축량 규모(5) | 1 | 2 | 3 | 4 | 5 | |
| | 국제감축실적 톤당 감축비용(5) | 1 | 2 | 3 | 4 | 5 | |
| 가점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사업참여 의향 확보 | 0 | | 5 | | | |
| | 사업위치, 기술, 내용, 지원의사 등 포함 | 0 | | 5 | | | |
| 합 계 | | 100 (+10) | | | | | |

20 . . .

심의회원 : _____ (인)

[별지 제17호의3 서식] 최종평가서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1. 지원사업 개요

| | | | |
|------|--|-------|--|
| 사업명 | | | |
| 지원기업 | | 수행책임자 | |
| 사업비 | | 협약기간 | |

2.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 | | | | |
|------|---------|--|------|--|
| 평가위원 | 성명 | | | |
| | 소속 및 직위 | | 전화번호 | |

4. 평가내용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매우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우수 | 점수 |
|-----------------------|-------------------------|-----------|----|----|----|------|----|
| 사업의 적정성 (60) | 타당성조사의 적정성(10) | 2 | 4 | 6 | 8 | 10 | |
| | 설치사업을 위한 설계 등 진전도(30) | 6 | 12 | 18 | 24 | 30 | |
| |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계획(20) | 4 | 8 | 12 | 16 | 20 | |
| 국제감축사업 연계 추진 가능성 (30) | 사업 추진의 준비성(15) | 3 | 6 | 9 | 12 | 15 | |
| | 사업비 집행 타당성(10) | 2 | 4 | 6 | 8 | 10 | |
| | 지속가능발전 기여(5) | 1 | 2 | 3 | 4 | 5 | |
| 사업의 경제성 (10) | 총 감축량 규모(5) | 1 | 2 | 3 | 4 | 5 | |
| | 국제감축실적 톤당 감축비용(5) | 1 | 2 | 3 | 4 | 5 | |
| 가점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사업참여 의향 확보 | 0 | | 5 | | | |
| | 사업위치, 기술, 내용, 지원의사 등 포함 | 0 | | 5 | | | |
| 합계 | | 100 (+10) | | | | | |

20 . . .

심의회원 : _____ (인)

[별지 제20호 서식] 외부위탁용역 활용계획서

외부위탁용역 활용계획서

1. 외부 위탁의 필요성

2. 위탁용역 기관 선정사유 및 활용계획

3. 위탁용역 기관 정보

1) 일반현황

- 기관명 :
- 주소
- 전화
- 홈페이지
- 참여인력

2) 위탁용역 기관의 역량 및 경험, 감축사업 관련 실적

3) 참여인력 명단 및 경력사항

4. 위탁용역 과업 내용

(첨부자료)

붙임1. 계약서 초안

붙임2. 실적 증빙자료

붙임3. 경력 증빙자료

붙임4. 견적서 (국내기관의 경우 비교견적 포함)

※ 세부 목차 등 추가 가능